

2008年度 綜合建設本部
綜合監査 結果 處分要求書



1. 처분요구서 일람표 (30건)

연번	제목 및 처분요약	소관	조치구분		쪽
			행정상	신분상	
1	<ul style="list-style-type: none"> 손실보상업무 부적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수용재결 후 재결보상금 공탁 확행 ⇒감정평가 후 1년 경과 시 재평가 ⇒감정평가서 검토를 위한 자체심의회 등 구성·운영 ⇒보상협의회 설치기준 완화·적용 방안 마련·시행 	총무부	주의 (개선)		4
2	<ul style="list-style-type: none"> 근무평정 부적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근무성적평정 기준에 맞게 평정 	총무부	주의		10
3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시설부대비 집행 부적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세출예산 편성기준 및 집행기준 준수 	도로관리부	주의		12
4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동계약이행계획서 승인 절차 미이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동계약 운영요령에 의한 승인절차 확행 	총무부	주의		16
5	<ul style="list-style-type: none"> 수익계약 내역 공개 불이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1천만원 이상 수익계약내역 공개 	총무부	주의		18
6	<ul style="list-style-type: none"> 도로상 맨홀 유지관리에 관한 협정서 이행 소홀 <ul style="list-style-type: none"> ⇒불합리한 협정서 내용 개선 	도로관리부	개선		20
7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직접시공 계획서 미징구 및 보증증권 관리 소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직접시공계획서 징구 ⇒보증보험증권 등은 유가증권수불부에 의거 정리 후 금고 또는 대행점에 보관 	총무부	주의		23
8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긴급 계약외뢰 부적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긴급계약 남용 금지 	건축부	주의		25
9	<ul style="list-style-type: none"> 옹암사거리 지하차도 설치공사 타당성조사 용역 부적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계약 이행중 해지되는 경우, 채무에 대한 대응(처리) 방안 강구 	총무부	주의		27
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정정 입찰공고 부적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정정공고시 공고기간 5일 이상 가산 	총무부	주의		30
11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하도급업체 대가지급 관련 업무 부적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하도대가 적정지급 확인 	총무부	주의		32

연번	제목 및 처분요약	소관	조치구분		쪽
			행정상	신분상	
12	◦ 종합감사 결과 처분요구사항 조치 부적정 ⇒ 감사처분요구사항 이행 철저	토목부	시정 (주의)	훈계 (2명)	35
13	◦ 문화재 시굴조사 용역 추진 부적정 ⇒ 효율적 예산·편성 운용	총무부 토목부	주의		38
14	◦ 과적차량 단속장비 구입 및 관리 부적정 ⇒ 입찰참가자격 과다 제한 지양 ⇒ 계약 미체결 업체 입찰보증금 세입 조치 및 부정당업자 제재 ⇒ 축종계 월 1회 이상 비교계측 확행 ⇒ 과적차량 검문소 효율적 재배치	총무부 도로관리부	시정 (개선)	훈계 (2명)	40
15	◦ 공유재산 사용료 부과 부적정 ⇒ 누락된 사용료 5,137천원 부과 조치	총무부	시정	훈계 (1명)	48
16	◦ 초지대교~인천간 도로개설공사 부적정 ⇒ 불필요한 시방규정 변경 및 고성도 구간의 동상방지층 및 암거 뒷채움재를 설계변경시 삭제	토목부	시정		50
17	◦ 쌍용아파트~신기파출소간 도로개설공사 부적정 ⇒ 공사중지 사업장 타절준공 조치	토목부	시정		53
18	◦ 도로 유지관리 소홀 ⇒ 도로포장공사 DB 구축 ⇒ 2006·2007년 재포장구간의 맨홀인상분 전수조사 후 하자보수 ⇒ 도로안전시설 적정 설치	도로관리부	시정		55
19	◦ 계약업무 제반규정 준수 소홀 ⇒ 규정 준수 및 건설공사대장 미통보 업체 행정처분	총무부	시정 (주의)		58
20	◦ 교통 안전시설물(표지병) 설치 부적정 ⇒ 과다 계상된 13,000천원 설계변경 감액 조치	토목부	시정		60
21	◦ 분뇨·축산폐수 통합 하수연계처리시설 설치 공사 설계변경 업무 소홀 ⇒ 설계변경 업무 철저 및 104,000천원 감액 조치	토목부	시정		62

연번	제목 및 처분요약	소관	조치구분		쪽
			행정상	신분상	
22	◦ 건축 시설공사 추진 부적정 ⇒ 과다계상·중복설계 및 공사시행 후 미정산 된 67,219천원 설계변경 감액 조치 ⇒ 시공불량 재시공 및 안전관리 철저	건축부	시정		64
23	◦ 직장보육시설 증축공사 공정관리 소홀 ⇒ 공사감리자 지도·감독 및 공사감독 철저	건축부	주의		70
24	◦ 건설재해예방 기술지도 미 실시 ⇒ 산업안전보건법령 위반자 노동관서 통보	건축부	주의		72
25	◦ 학익하수종말처리장 건설공사 환경관리비 정상 부적정 ⇒ 폐기물 처리비로 부당하게 정산한 54,218천원 재정산	토목부	시정		74
26	◦ 건설기술자 배치·관리 소홀 ⇒ 건설기술자 배치기준에 적합하게 배치 하고 준수여부 철저 감독	토목부	주의 (시정)		76
27	◦ 굴포천 자연형하천 조성사업 준설토 처리 감독 소홀 ⇒ 철저한 기초조사를 통해 재활용 여부 판단	토목부	주의	훈계 (1명)	79
28	◦ 준설토 처리용역 관리 소홀 ⇒ 수집·운반 재위탁시 승인절차 이행	토목부	시정		82
29	◦ 인천종합비즈니스센터 건립공사 실시설계 (기계분야) 부적정 ⇒ 설계내역, 도면 등 철저 검토	건축부	시정		84
30	◦ 길정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전기공사 감리 투입시기 부적정 ⇒ 공사 착공전 감리원 투입	건축부	시정		86

[일련번호 : 1]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부서기관명] 종합건설본부 총무부

[행정상 조치] 주의·개선

[재정상 조치]

[신분상 조치]

[제 목] 손실보상업무 부적정

○ ◇◇◇◇ 소유 물건 현황

(단위 : 원)

편입물건						당초 보상금액	재결금액	비고
토지			건물					
소재지	지목	면적 (㎡)	소재지	물건의종류 구조및규격	면적 (㎡)			
○구 ○동 00-0 00-0, 00-0	대지	661.2 (1,503.20) x 661.2(1,503.2)	○구 ○동 00-0	옥탑 철콘스라브	51.24	일괄 580,700,000	일괄 612,184,000	토지, 건물 일괄평가

○ 추진경위

2006-05-02	손실보상협의 통보(1차)
2006-06-14	손실보상협의 통보(2차)
2006-09-19	손실보상협의 통보(3차)
2006-12-19	수용재결 신청
2008-02-28	수용재결
2008-04-17	수용개시
2008-04-18	수용재결 실효

[위법부당내용]

1. 재결서에 의한 공탁 미이행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 보상법”이라 한다)」 제40조제2항에 의하면 ‘보상금을 받을 자가 그 수령을 거부하거나 보상금을 수령할 수 없는 때에는 수용개시일까지

수용하고자 하는 토지 등의 소재지의 공탁소에 보상금을 공탁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36조제1항에 의하면 ‘재결에 계산상 또는 기재상의 잘못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잘못이 있는 것이 명백한 때에는 토지수용위원회는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경정재결을 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42조제1항 및 2항에서는 ‘①사업시행자가 수용 또는 사용의 개시일까지 관할 토지수용위원회가 재결한 보상금을 지급 또는 공탁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은 그 효력을 상실한다. ②사업시행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결의 효력이 상실됨으로 인하여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이 입은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2008.02.28.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신흥동 삼익아파트~ 동국제강간 도로개설공사 구간내 인천시 ○구 ○동 00-0, 00-0, 00-0번지 ○○○ 소유의 토지 등에 대한 수용재결과 관련하여 동 재결서상에 소유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잔여지(○동 00-0번지 토지)가 포함 재결된 사실을 확인하였다면 이에 대하여는 토지보상법 제36조 제1항에 의거 경정재결(잔여지를 제외하고 재결)을 통하여 하자를 치유하고 재결보상금을 지급 또는 공탁 처리하였어야 합니다.

그러나, 종합건설본부 보상1팀에서는 동 재결서상의 하자에 대한 경정재결을 득한 후 수용개시일(2008.04.17.)까지 재결보상금을 지급 또는 공탁하였어야함에도 이를 이행치 않아 토지보상법 제42조제1항에 의거 재결이 실효됨은 물론, 그로 인한 손실을 추가 보상하여야 하는 결과를 초래한 사실이 있습니다.

2. 보상업무 지연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17조제2항제3호에 의하면 ‘사업시행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른 2인 이상의 감정평가업자에게 대상물건의 평가를 다시 의뢰하여야 한다. 3. 평가를 한 후 1년이 경과할 때까지 보상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한 경우’로 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68조에 의하면 ‘사업시행자는 토지등에 대한

보상액을 산정하려는 경우에는 감정평가업자 2인 이상에게 토지 등의 평가를 의뢰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2008.02.28.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신흥동 삼익아파트~동국제강간 도로개설공사 구간내 인천시 ○구 ○동 00-0, 00-0, 00-0번지 ○○○ 소유의 토지 등에 대한 수용재결이 2008.04.18. 실효되었고, 최초 평가(2006.04.26.)를 한 후 1년이 경과할 때까지 보상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되므로 이로 인한 보상업무가 지연된 것을 감안,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17조제2항제3호에 의거 조속히 재감정평가를 통한 보상액산정 및 협의 등의 행정 절차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종합건설본부 보상1팀에서는 감사시점인 현재(2008.07.05)까지도 재감정평가 등의 적절한 행정절차를 이행치 않은 사실이 있습니다.

3. 감정평가서 검토 부적정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17조제1항에 의하면 ‘사업시행자는 제1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보상평가서를 검토한 결과 그 평가가 관계법령에 위반하여 평가되었거나 부당하게 평가되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감정평가업자에게 그 사유를 명시하여 다시 평가할 것을 요구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제2항에 의하면 ‘이 규칙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하는 경우 평가가 크게 부적정하게 될 요인이 있는 경우에는 적정하다고 판단되는 다른 방법으로 평가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상평가서에 그 사유를 기재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으며,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9조제1항에 의하면 ‘감정평가서에는 8. 평가가액의 산출근거 및 그 결정에 관한 의견 기재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9조 제2항에 의하면 ‘제15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구분소유권의 대상이 되는 건물부분과 그 대지사용권을 일괄하여 평가하는 경우에는 거래사례

비교법에 의한다. 다만, 거래사례비교법에 의한 평가가 적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원가법 또는 수익환원법에 의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신흥동 삼익아파트~ 동국제강간 도로개설공사 구간내 편입된 인천시 ○구 ○동 00-0, 00-0, 00-0번지 ○○○ 소유의 토지 등(○○○○상가)에 당초 감정평가서(○○○○감정평가법인 제○○○○-000000호 2006.04.21. / (주)○○감정평가법인 제○○○○-000호 2006.04.21.)상에는 당시 감정평가대상 물건인 ○○○○상가는 옥탑을 포함한 92호의 구분상가건물로서 지하1층, 지상2층의 상가이나 토지는 일반 공유지분의 형태로 존재하는 대지권이 완전하게 정리되지 않은 복잡한 특성 등을 감안하여 감정평가서상에 이에 대한 구체적인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적용 평가방법 등 그 결정에 관한 구체적인 의견의 개진이 있어야 함에도 동 평가서상에는 평가방법 등에 대한 구체적인 의견의 개진이 없어 적정 평가 여부 등에 대한 검토가 불가한 바,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17조제1항 등 관련 규정에 의거 감정평가서의 보완 또는 재평가 요구 조치를 하였어야 합니다.

그러나, 종합건설본부 보상1팀에서는 당초 감정평가서상의 감정평가액 산출근거 및 평가방법 등에 대한 적절한 검토 절차를 이행치 않은 사실이 있습니다.

4. 보상협의회 미개최

토지보상법 제82조(보상협의회)에 의하면 ‘①공익사업이 시행되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보상협의회를 둘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공익사업(공익사업지구 면적이 10만 제곱미터 이상이고, 토지등의 소유자가 50인 이상인 공익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협의회를 두어야 한다.

1. 보상액 평가를 위한 사전 의견수렴에 관한 사항
2. 잔여지의 범위 및 이주대책의 수립에 관한 사항
3. 당해 사업지역내 공공시설의

이전 등에 관한 사항 4.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 등이 요구하는 사항 중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5.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부의하는 사항 ②보상협의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중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보상협의회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 2. 법관, 변호사, 공증인 또는 감정평가나 보상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험이 있는 자 3.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 4. 사업시행자'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비록, 동 규정이 일정규모 이하는 임의규정이라 하더라도 공익사업으로 인하여 이주하게 되는 주민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보상과 이주대책 등에 대하여 사전에 협의함으로써 원활한 사업추진은 물론 주민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법에서 정한 유일의 공식 협의기구입니다.

따라서, 사업시행자는 보상협의회를 두어 상호 이해의 충돌을 예방 또는 완화하고 비공식기구가 아닌 법에 의한 공식기구에서 보상과 관련한 내용을 협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그러나, 종합건설본부에서는 보상1팀 소관 '부개초교~경인국도간 도로개설' 등 18개 사업과 보상2팀 소관 '동인천역 북광장 조성 사업' 등 9개 사업을 포함하여 총 27개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보상법 제82조에서 정한 보상협의회를 구성·운영치 않은 사실이 있습니다.

[처 분 요 구]

1. 수용재결 후 재결보상금을 공탁하지 아니하여 재결이 실효되는 없도록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향후 이와같은 사례가 재발될 시에는 엄중 문책하게 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주의
2. 공익사업에 편입되는 토지등에 대하여 손실보상을 위한 감정평가를

실시하는 때에는 신속하고 성실한 협의과정을 거쳐 보상금을 지급하고, 미협의 시에는 즉시 수용재결을 신청함으로써 사업지연 등으로 인한 예산낭비 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하시기 바라며, 예산부족 등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감정평가 후 1년이 경과한 때에는 재평가하여 손실보상 절차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 주의

3.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17조 규정에 의한 감정평가서의 위법·부당 평가여부를 검토함에 있어, 보다 심도있는 검토를 위하여 자체심의회 등을 구성·운영하시기 바랍니다. ⇒ 개선
4. 토지보상법 제82조제1항 단서규정에 불구하고, 원활한 사업추진과 주민의 불안감 해소·폭넓은 의견청취 및 민원발생 차단 등을 위하여 보상협의회 설치기준을 완화·적용하는 방안을 마련·시행하시기 바랍니다. ⇒ 개선

[일련번호 : 2]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부서기관명] 종합건설본부 총무부

[행정상 조치] 주의

[재정상 조치]

[신분상 조치]

[제 목] 근무평정 부적정

[위법부당내용]

○ 『지방공무원 평정규칙』 제8조에서 평정자 및 확인자는 업무추진 실적등의 기재내용과 평정대상기간 중 평정대상공무원의 업무수행에 대한 관찰결과 등을 참고하여 근무실적·직무수행능력 및 직무수행태도를 평정하여야 하며, 제9조에서 근무성적의 평정자 및 확인자는 평정결과를 종합하여 평정단위별서열명부를 작성하여 근무성적평정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고, 근무성적평정위원회는 근무성적의 평정자 및 확인자가 제출한 평정단위별서열명부를 기초로 근무성적평정표에 분포비율에 맞게 평정대상공무원의 순위와 평정점을 심사 결정하여야 하되, 이 경우 평정단위별서열명부의 순위는 변경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2007년도 하반기 근무성적평정 시행계획(총무과-24678, 2007.12.21)」에서 평정단위별 서열명부를 작성할 때에는 확인자는 평정자와 협의하여 근무성적평정 결과 등을 기초로 서열명부를 작성하되, 평정자가 동일한 평정대상공무원군에 대하여는 확인자가 그 상호간의 서열을 조정할 수 없다.라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인천광역시 종합건설본부에서는 2007.4월 4부 9과 26팀에서 4부 11팀으로 조직을 개편하고 다시 2007.10월 4부 13팀으로 개편된

이후 2007.하반기 근무성적 평정을 하면서 「2007년도 하반기 근무성적평정 시행계획」에서 평정단위를 부단위에서 본부단위로 통합하고 5급이하, 기능직 직원의 평정자를 부장, 확인자를 본부장으로 하였다면 확인자는 평정자의 의견을 존중하고 조직내 비중, 발전가능성, 잠재력 등을 감안한 후 평정자와 협의하여 평정단위별 서열명부를 작성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종합건설본부에서 실시한 2007. 하반기 근무성적평정 내역을 보면 각 부별 평정대상공무원군 또는 단일 평정대상공무원군을 평정단위별 서열명부로 작성하면서 “2007. 하반기 종합건설본부 근무성적평정 명세”에서와 같이 평정자가 평정대상공무원군에 대하여 평정한 상호간의 서열(점수)을 부여하였다면, 확인자는 평정단위별 서열명부를 작성할 때 평정자와 협의하여 평정자가 평정한 평정대상공무원군의 순위를 존중하여 평정단위별 서열명부를 작성하여야 함에도, 종합건설본부에서는 확인자가 이를 평정자와의 협의없이 평정대상공무원군 상호간의 서열을 조정하여 평정단위별 서열명부를 작성함으로써 평정자의 평정결과를 실효없게 하고, 「2007년도 하반기 근무성적평정 시행계획」서에 정한 평정기준에 위배되게 근무성적평정을 실시한 사실이 있습니다.

[처 분 요 구]

1. 소속 직원들을 대상으로 근무성적평정을 실시할 때에는 평정자와 확인자가 상호 충분한 협의를 통해 근무성적평정 기준에 위배되게 평정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 3]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부서기관명] 종합건설본부 도로관리부

[행정상 조치] 주의

[재정상 조치]

[신분상 조치]

[제 목] 시설부대비 집행 부적정

[위법부당내용]

1. 피복 구입 부적정

◦ 피복관련비 시설부대비 집행내역

구 분	2006		2007		2008		비고
	연인원	회/금액	연인원	회/금액	연인원	회/금액	
도 로 팀	18	2/5,576	14	5,208			
하 수 팀	8	1/3,200	8	1/4,000	9	1/5,018	
건 축 팀			16	1/1,329			
도로시설관리팀			17	3/6,500			

◦ 종합건설본부 사업현황(2006-2008)

구 분	합 계	책임감리	일반공사	비 고
도 로 팀	22	13	9	
하 수 팀	11	10	1	
건 축 팀	39	32	7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편성기준』의 「지방자치단체 세입·세출 예산과목 구분과 설정 규정(행정안전부훈령 제234호)」에서 시설부대비는 3. 재산취득 및 공사추진에 따르는 여비, 용지매수 및 시공관리에 직접 필요한 일용잡급, 공사현장 또는 사업장 감독의 현장체재비 및 피복비 등으로 집행할 수 있으며, 10. 공사감독관은 책임감리대상

사업이 아닌 일반공사대상 사업인 경우에만 파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129호)』에서 현장감독공무원의 여비 및 체재비, 피복비 등으로 집행하며 지급대상은 감독공무원으로 명을 받은 자에 한한다. 다만, 자치단체장의 명을 받아 일시적으로 현장감독 또는 점검에 참여하는 자에게도 지급가능하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행정안전부의 질의·회신에서 “공사추진에 따르는 감독여비로 집행하고자 할 경우 대상자는 당해 공사의 감독공무원만으로 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지휘계통의 상급자(계장 또는 팀장, 과장)도 가능한지?”의 답변에서 위 집행기준에서 명시한 바에 따라 “당해 공사에 대하여 자치단체장의 지시가 있거나 보고를 하여 감독공무원, 직상급자, 관계자가 공사현장 감독 또는 점검을 한 경우에는 지급이 가능하다”는 답변이 있었으나, 이 경우 자치단체장의 명을 받아 일시적으로 현장감독 또는 점검에 참여하는 자에게 지급이 가능하다는 의미는 또 다른 질의·답변에서 “출장명령에 의한 것이 아니며, 당해 시설공사의 일시적 감독 및 점검에 참여한다는 사항을 내부결재 등에 의하여 명령 받은 경우를 의미함”이라고 답변하였다면,

공사감독관에게 지급되는 여비, 체재비 및 피복비는 일차적으로 책임감리대상사업이 아닌 일반공사대상 사업인 경우에 한하여야 할 것이며, 자치단체장의 명을 받아 일시적으로 현장감독 또는 점검에 참여하는 자는 일상적인 업무수행이 아닌 내부결재 등에 의하여 명령을 받은 자에 한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종합건설본부에서는 공사감독관에 대하여 피복비(의류, 신발 등)를 시설부대비에서 집행할 때에는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편성기준』 및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서 정한 바에 따라 일반공사대상 사업의 공사감독관에게만 지급하고, 책임감리대상 사업의 지원업무수행자에게는 동 경비를 지급할 수 없음에도 이를 혼재하여 공사감독관 뿐만 아니라 지원업무수행자에게도 피복관련

경비를 지급하고 있으며, 이를 구입할 때에도 『2008년도 예산편성 기본지침』에서 편성기준단가를 작업복 30천원, 방한복 50천원, 안전화 35천원으로 정하고 있고, 「월간 물가자료(2008.5월호)」에서도 안전화 45천원(작업복, 방한복 - 기준금액 없음)으로 정하고 있다면 이를 기준으로 하여 적정한 금액의 피복비를 구입하여야 할 것임에도, 작업복 300천원 상당, 방한복 300천원 상당, 안전화100천원 상당 등 기준금액에 지나치게 초과하여 피복관련 시설부대비를 집행한 사실이 있습니다.

2. 공공요금 집행 부적정

- 공공요금(휴대용전화기) 시설부대비 집행내역 (단위:원)

년 도	사용금액		비고
	011-767-9144	011-768-9144	
2006년	103,680	96,120	8-12월
2007년	166,010	206,310	1-12월
2008년	66,140	95,890	1- 6월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편성기준』의 「지방자치단체 세입·세출 예산과목 구분과 설정 규정(행정안전부훈령 제234호)」에서 1. 시설비 또는 도로 및 하천, 항만 등의 대수선비와 재산취득에 직접 소요되는 부대경비로서 시공관리에 필요한 공공요금에 대하여 시설부대부대로 집행가능하다고 하고 있음에도,

종합건설본부 도로관리부에서는 도로포장 업무의 효율성과 신속한 복구를 위해 공용으로 휴대용전화를 가입하여 도로포장공사 및 직영 포장공사 시에 연락체계를 위하여 사용하고 있다면 이는 당해 공사와 직접 관련이 있다기 보다는 도로관리부 고유사무 추진에 가까울 것이므로 일반운영비에서 그 사용경비를 집행하는 것이 타당할 것임에도 시설부대비로 휴대용전화 사용요금을 지급한 사실이 있습니다.

3. 물품구입 부적정

- 사무용비품 시설부대비 집행내역 (단위:원)

품목	금액	구입목적	비고
코팅기(A3)	300,000	직영사업 및 설해대책 현황판 작성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편성기준』의 「지방자치단체 세입·세출 예산과목 구분과 설정 규정(행정안전부훈령 제234호)」에서 시설부대비는 9. 당해시설공사의 계약체결, 감정평가 및 현장지도·감독경비·물품 검수경비 등 당해 시설공사와 직접관련이 있는 경비에 한해서 지출하며, 당해 공사와 직접관계가 없는 관서운영비적 경비는 시설부대비에서 집행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종합건설본부 도로관리부에서는 “직영사업 및 설해대책 현황판 작성 및 각종 업무자료 보존용 코팅작업”에 활용한다는 사유로 2007.12월에 코팅기를 구입하였는바, 이는 당해 공사와 직접관련이 있다기 보다는 기관운영에 따른 사무용 비품에 해당될 것이므로 자산취득비에 예산을 계상하여 구입함이 타당할 것임에도 동 물품 구입비용을 시설부대비에서 집행한 사실이 있습니다.

[처 분 요 구]

-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편성기준』 및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 기준』에서 정한 기준에 위배되게 지원업무수행자에게 시설부대비가 집행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시고, 도로관리부의 공공요금(전화요금)은 일반운영비로 편성하여 집행하시기 바라며, 시설부대비로 사무용 비품 및 물품 등 관서운영 경비가 집행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 4]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부서기관명] 종합건설본부 총무부

[행정상 조치] 주의

[재정상 조치]

[신분상 조치]

[제 목] 공동계약이행계획서 승인 절차 미이행

○ 착공시 공동계약이행계획서 제출 현황

구 분	대상 공사	계획서 제출	승인건수
계	11	6	-
2006년분	2	2	-
2007년분	7	3	-
2008년분	2	1	-

[위법부당내용]

○ 공사계약 특수조건17조의2(공동계약 내용의 준수) 및 지방자치단체 공동계약 운영요령(행정자치부예규 제258호)에 의하면 공사 착공신고서 제출시 공동수급체 구성원별 출자비율 또는 분담내용(구성원별 이행 부분 및 내역서, 공동계약이행계획서, 그 밖의 수요기관이 요구하는 사항)등이 포함된 공동계약이행계획서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되어있고, 다만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수요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 착공신고서 제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제출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종합건설본부 회계팀에서는 2006년부터 현재까지 2006.10.31. 굴포천 자연형 하천 조성사업을 ○○○○산업 및 (주)○○○와 공동

도급계약 체결 등 공동도급계약이행계획서 제출대상이 총 11건 중 5건이 미 제출되었고, 제출된 6건에 대해서도 관련 규정에 따라 내용(공동수급체 구성원, 공사현장 조직 및 인원투입현황)을 검토하여 공동계약 이행능력 등을 확인하고 승인하여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습니다.

[처 분 요 구]

1. 공사계약 특수조건17조의2(공동계약 내용의 준수) 및 지방자치단체 공동계약 운영요령(행정자치부예규 제258호)에 의거 승인절차를 확행하여 부실공사가 없도록 조치 바랍니다.

[일련번호 : 5]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부서기관명] 종합건설본부 총무부

[행정상 조치] 주의

[재정상 조치]

[신분상 조치]

[제 목] 수의계약 내역 공개 불이행

[위법부당내용]

○ 각종 계약업무의 공정성 및 투명성을 보장하기위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계약의 방법) 및 동법 시행령 제25조(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동법 제31조(수의계약 내역의 공개), 그리고 행정자치부예규 제204호(2006.2.7) 지방자치단체 수의 계약 운영요령에 따르면, 공통사항으로 계약금액 1천만원이상 수의 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체결일을 기준으로 다음달 10일까지 월별 수의계약내역을 공개하여야 하며, 수의계약내역의 공개는 지방자치단체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계약이행 완료일로부터 1년 이상 공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수의계약공개내역서에는 사업명 및 계약이행기간, 계약상대자의 대표자 성명, 상호,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 예정가격(또는 예정금액) 및 계약금액, 법령상 수의계약의 근거, 그 밖에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내용등을 그 지방자치단체의 인터넷홈페이지에 계약이행 완료일부터 1년이상 공개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나, 종합건설본부 회계팀에서는 2007.10.11. (주)○○○사무소와 계약체결한 「○○○청사 추가증축 실시 설계용역」 사업 및 2007.5.7. (주)○○○○○○○○○○○와 체결한 「인천종합비즈니스센터건립공사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등 2건에 대해서 수의계약내용의 공개요령을 미 이행한 사실이 있습니다.

[처 분 요 구]

1. 1천만원이상 수의계약 시에는 공개내역서를 빠짐없이 작성하여 공개함으로써 계약의 투명성확보에 노력하시고, 재차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조치바랍니다.

[일련번호 : 6]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부서기관명] 종합건설본부 도로관리부

[행정상 조치] 개선

[재정상 조치]

[신분상 조치]

[제 목] 도로상 맨홀 유지관리에 관한 협정서 이행 소홀

[위법부당내용]

« 1989.3.20일 도로관리청(행정기관),과 맨홀관리관간의 협정서 주요내용 »

○ 도로관리청인 건설부장관과 맨홀 관리기관(한국전력공사, 한국전기통신공사, 한국가스공사, 한국수자원공사)과의 도로상 맨홀 유지관리에 관한 도로관리청과 맨홀 관리기관간의 협정서를 부칙 포함 11개 항목으로 체결한바 있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 도로에 설치된 각종 맨홀의 구체 및 뚜껑의 유지관리의 책임은 맨홀관리기관에 있으며, 다만 맨홀 뚜껑면과 그 주변의 도로포장면이 일치하지 아니할 경우 그 높이의 조정은 맨홀관리기관의 비용부담으로 도로관리청이 담당한다.
- 도로관리청은 매년 6월말까지 각 소관별 맨홀 정비대상을 맨홀관리기관과 합동으로 조사하고 7월말까지 정비에 소요되는 비용을 산출하여 맨홀관리기관에 통지하며, 보수비의 통지를 받은 맨홀관리기관은 다음 연도 3월말까지 도로관리청에 이를 납부한다.
- 도로관리청은 맨홀 정비대상이 추가로 발생하거나 수량변동으로 인하여 맨홀관리기관에 통지한 보수비로는 비용이 부족할 때에는 부족액을 추가로 청구할 수 있으며, 청구받은 맨홀관리기관은 2개월

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 도로관리청 및 맨홀관리기관은 매분기에 1회이상 합동순찰조를 편성, 운영하여 맨홀의 이상유무를 점검하도록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보수비용에 관한 사항 »

○ 협정서 제6조(보수비용 요청 및 납부절차)를 보면 매년 6월말까지 정비대상을 맨홀관리기관과 합동조사후 7월말까지 정비에 소요되는 비용을 산출하여 관리기관에 통지하여 다음해 3월말까지 도로관리청에 납부하도록 되어 있고, 종합건설본부 도로시설관리팀에서는 매년 불량 맨홀에 대하여 보수 후 비용을 맨홀 관리기관에 청구를 하고 있습니다.

- 2006년도 73개소 53,553,640원 (2007.1.29일 징수결의)
- 2007년도 120개소 82,808,110원 (2008.3.10일 징수결의)
- 2008년도 : 2009년 초에 청구예정

따라서, 비용청구함에 있어 최소한 3월 이전에 납부하도록 해야 함에도 비용납부고지 시기를 매년 달리 하고 있음에 따라 징수시기 또한 2007년에는 2월부터 10월까지 수납되었고, 2008년에는 3월과 4월까지 수납되었고, 수납일자를 넘겨 수개월동안 연체되는 기관에 대해 가산금등 필요한 조치도 없이 시행되고 있는바 징수노력에 소홀한 사실이 있습니다.

또한, 협정서 제3조(적용범위)와 제4조(관리책임)를 보면 각종 맨홀(점검구 포함)의 설치(이전포함)와 유지관리 및 비용부담에 적용하고 있고, 관리책임은 도로에 설치된 각종 맨홀의 구체 및 뚜껑의 유지관리의 책임은 맨홀관리기관에 있으며, 비용 또한 맨홀관리기관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2008년도 상반기 현황과 같이 맨홀과 관련한 보수등 유지

관리를 하고 있음에도 유지관리비용을 맨홀관리기관에서 부담한다고 협정서에 명시된바 있으나, 감사일 현재 년 1회 불량맨홀 조정공사 비용 외에는 평소 유지보수에 필요한 경비를 관리기관에 청구한 사례가 한 차례도 없이 전적으로 관리청(종합건설본부)의 부담으로 하고 있습니다.

《 협정서 내용 보완 》

- ① 1989.3.20. 도로관리청(행정기관)과 맨홀관리관간의 협정서를 10여년이 지난 감사일 현재까지도 이를 적용하면서 협정서대로의 이행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거나 비용 청구문제 등 비현실적인 내용이 있음에도 보완하려는 노력이 없었으며, 특히, 비용 청구에 있어서 관리청에서 先시공 後비용청구임에도 불구하고 납부 기간을 넘겨도 가산금등의 적용을 하지 않아 관리청에서 일방적인 비용부담을 안고 있음.
- ② 맨홀 설치시 구체가 침하되지 않도록 철저히 시공해야 한다는 규정에도 불구하고 침하 내지는 파손 등 도로관리청과 맨홀관리관은 매분기마다 합동순찰조를 편성하여 이상 유무를 점검하는 사항
- ③ 보수비용 요청 및 납부절차에 관한 사항(합동조사 시기 및 비용 산출과 비용 납부시기 등)

[처 분 요 구]

- 1. 불량맨홀 조정공사 비용 외에 유지보수에 필요한 경비도 관리기관에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 2. 도로관리청(행정기관)과 맨홀관리관간의 협정서는 지난 1989.3.20. 체결된바, 19년이 지난 지금도 협정서에 의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어 불합리한 사항이 정리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위에서 나열한 협정서 내용에 대한 보완 사항을 검토하여 관계기관이나 부서에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주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 7]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부서기관명] 종합건설본부 총무부

[행정상 조치] 주의

[재정상 조치]

[신분상 조치]

[제 목] 직접시공 계획서 미징구 및 보증증권 관리 소홀

○ 직접시공계획서 제출현황

구 분	전체공사 (1천만원이상)	대상공사	계획서 제출 여부		
			제 출		미제출
			기한내	기한경과	
계	68	63	50	-	13
2006년분	17	15	12	-	3
2007년분	36	34	27	-	7
2008년분	15	14	11	-	3

[위법부당내용]

1. 시공계획서 미징구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의2, 같은법 시행령 제30조의2의 규정에 의하면 도급금액 30억원 미만의 건설공사(2007.12.28.이후 공사는 해당법률 개정에 따라 4천만원이상 30억원 미만 공사)의 경우 30/100을 원도급자가 직접시공하여야 하고 그에 따른 직접시공계획서를 계약체결 후 30일 이내 제출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종합건설본부 회계팀에서는 '06.7.10일 「대1-11호선(길주로)도로확장 공사」 를 ○○○건설주식회사와 2,232,259천원에 계약을 체결하면서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의2, 같은법 시행령 제30조의2의 규정에 의거

도급금액 30억원 미만의 건설공사(2007.12.28.이후 공사는 해당법률 개정에 따라 4천만원이상 30억원 미만 공사)의 경우 30/100을 원도급자가 직접 시공 하여야 하고 그에 따른 직접시공계획서를 계약체결 후 30일 이내 제출토록 규정하고 있으나 위 현황과 같이 13건에 대해 직접 시공계획서를 미 청구한 사실이 있습니다.

2. 보증서 관리 소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51조, 제52조, 제55조 및 인천광역시재무회계규칙 제84조에 의거 보증보험증권 등에 의하여 계약보증금 등을 납부할 때에는 보증금납부서와 함께 제출하게 하여 보증금납부서는 지출증빙서류와 함께 보관하고 보증보험증권 등은 유가증권취급공무원으로 하여금 유가증권수불부에 의거 정리하여 금고 또는 시 공금지급 대행점에 보관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06.7.10일 「대1-11호선(길주로)도로확장공사」를 ○○○○건설 주식회사와 2,232,259천원에 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보증서 2건을 관리함에 있어 관련규정에 따라 유가증권취급공무원으로 하여금 유가증권수불부에 의거 정리하여 금고에 보관하지 아니하고 관련 지출증빙서류에 그대로 함께 편철하여 관리하였습니다.

[처 분 요 구]

1.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의2, 같은법 시행령 제30조의2의 규정에 따라 직접시공계획서를 제출받아 공사의 품질이나 시공상 능률을 도모 하는데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2. 보증보험증권 등은 유가증권취급공무원으로 하여금 유가증권수불부에 의거 정리하여 금고 또는 시 공금지급 대행점에 보관 하도록 조치 바랍니다.

[일련번호 : 8]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부서기관명] 종합건설본부 건축부

[행정상 조치] 주의

[재정상 조치]

[신분상 조치]

[제 목] 긴급 계약의뢰 부적정

[위법부당내용]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0조 (긴급한 재해복구 등에 의한 수의계약의 대상) 영 제25조제1항제2호에서 "재해복구 등의 경우"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응급복구와 관련한 장비임차 및 자재구입의 경우. 2. 이재민 구호를 위한 물품·의약품 등의 조달 및 임시구호 시설 설치의 경우. 3. 방역·소독 등의 용역의 경우. 4. 시설물 붕괴 우려 등을 예방하기 위한 응급조치의 경우. 5.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긴급공사라 함은 천재지변, 작전상의 병력이동, 긴급한 행사, 원자재의 가격급등 그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로서 경쟁에 부칠 여유가 없는 경우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정한 공고기간을 거쳐 실시하고 계약을 체결 하면 당해 사업의 목적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 제한하고 있으나,

종합건설본부 건축부에서는 단순히 사업에 대한 조기집행이나 시 주관부서의 요청, 그리고 이용자의 사기증진을 이유로 계약부서에 긴급으로 계약의뢰 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입찰공고의 시기)에 따른 일반적인 공고일보다 짧은(입찰서 제출마감일의 전일부터 기산하여 5일 전까지) 공고기간으로 최소한 2일 이상의 응찰기회를 막는 결과를 초래하였습니다.

[처 분 요 구]

1. 긴급계약은 천재지변, 작전상의 병력이동, 긴급한 행사, 원자재의 가격급등 그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로서 경쟁에 부칠 여유가 없는 경우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정한 공고기간을 거쳐 실시하고 계약을 체결하면 당해 사업의 목적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합니다.

향후, 긴급계약 의뢰함에 있어서 조속한 업무추진을 위한 수단으로 남용하는 일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 9]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부서기관명] 종합건설본부 총무부

[행정상 조치] 주의

[재정상 조치]

[신분상 조치]

[제 목] **용암사거리 지하차도 설치공사 타당성조사 용역 관련**

[위법부당내용]

종합건설본부에서는 용암사거리 지하차도 설치공사를 시행하기 전 사업타당성에 대한 객관적인 근거를 마련코자 타당성조사 용역을 발주 (주)○○○술단을 도급자(도급액 55,511천원)로 선정하여 2007.09.13부터 11월 13일까지 용역기간을 정하여 2007.09.13일 착수 후 용역을 수행하였습니다.

그러나 인천항 항만배후도로 발생량 분석에 관한 연구용역(항만공항 지원과 2005. 9월)에서 용암사거리 지하차도 설치공사 사업을 포함한 남항 일원 도로에 대한 교통량 조사 및 경제 분석이 시행됨을 알고 2007.10.15 계약상대자 (주)○○○술단에 계약해지 통보를 하였습니다.

1. 변경입찰 공고에 따른 설계금액 변경 관련

종합건설본부에서는 위 “현황”과 같이 용암사거리 지하차도 설치공사 타당성조사 용역을 발주하고 계약상대자를 결정하기 위한 입찰공고를 함에 있어서 당초 입찰공고(2007.08.20) 시 해당분야 기술사로 하여금 용역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일위대가에 기술사 단가(263,837원)를 적용하여 용역예정금액을 총 63,690천원으로 설계하여 인천지역 업체로 제한하는 입찰공고를 하였으나, 인천지역 업체 중

해당 기술사를 보유하여 본 용역에 충족할 만한 업체가 1개 업체만이 있음을 알고 재공고(2007.08.27)를 하였습니다.

입찰재공고를 하면서 계약담당자는 입찰참가자격을 해당분야 기술사를 보유한 업체를 해당분야 기술자 보유한 업체로 정정[총무부-4620 (2007.08.27)]하고 이에 따른 설계서(용역예정금액)의 인건비 등 변동요인이 발생하였으나 설계내역을 변경하지 아니하고 설계금액의 변경 없이 입찰공고 하였습니다.

※ 참여인원을 기술사에서 기술자로 변경하기 위해서는 사업부서(토목부)의 검토 및 협의 절차가 필요했으며 설계서를 재 작성토록 하여야 했습니다.

2. 용역계약 해지에 따른 사후처리 미흡

기술용역계약일반조건 제30조에 의하면 발주기관은 객관적으로 명백한 발주기관의 불가피한 사정이 발생한 때에는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수행부분의 대가 중 지급하지 아니한 금액·전체용역의 완성을 위하여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일 이전에 투입된 계약상대자의 인력, 자재 및 장비의 철수비용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제 또는 해지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종합건설본부에서는 계약상대자 (주)○○○술단이 2007.09.13. 착수한 용암사거리 지하철도 설치공사 타당성조사 용역과 시 항만 공항지원과에서 2005년 9월 완료한 인천항 항만배후도로 발생량 분석에 관한 용역내용이 중복됨을 알고 계약해지 함에 있어서 위 규정에 의거 착수일 이후 계약해지일 전일까지의 30여일분의 용역 대가, 인력·자재 및 장비의 철수비용 등을 확인하여 대가를 지급 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2008년 7월 감사일 현재까지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아니하고 있습니다.

※ (주)한서기술단 계약해지 후 9개월이 지난 2008. 6월 현재 대가에 대한 지급 청구 없음

[처 분 요 구]

1. 향후 동일 사례 발생치 않도록 업무처리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라며, 특히, 계약의 이행중 해지되는 경우 채무에 대한 대응(처리) 방안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 10]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부서기관명] 종합건설본부 총무부

[행정상 조치] 주의

[재정상 조치]

[신분상 조치]

[제 목] 정정 입찰공고 부적정

○ 정정 입찰공고 현황

구분	공 고 명	당초공고일 (정정공고일)	변경사유
공사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 개보수공사	2007.10. 4. (2007.10. 5.)	입찰참가자격 변경
"	길정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전기공사	2008. 1. 2. (2008. 1. 2.)	입찰서 마감일시 변경
"	송암미술관 리모델링 및 증축 전기소방공사	2008. 1. 3. (2008. 1. 3.)	입찰참가자격 변경
"	장병휴게소 개보수공사	2008. 4. 1. (2008. 4. 2.)	입찰참가자격 변경
용역	연안부두 수산물1길 도로정비공사 폐기물처리용역	2007.12. 3. (2007.12. 5.)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변경
"	초지대교-인천도로개설공사 (2-1공구) 사후환경영향조사용역	2008. 4. 8. (2008. 4. 9.)	경쟁방식 변경
"	남동로 특화거리 조성사업 폐기물처리용역	2008. 4.10. (2008. 4.11.)	계약이행방식 변경
"	인주로 특화거리 조성사업 폐기물처리용역	2008. 4.11. (2008. 4.14.)	공고내용 변경
"	가좌하수처리장 고도처리사업 폐기물처리용역	2008. 4.30. (2008. 5. 2.)	공동계약사항 변경

[위법부당내용]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3조제2항에 의하면 계약담당자는 입찰 공고한 내용에 관련 법령의 오기 등 경미한

하자가 있어 정정공고를 하는 경우에는 공고기간의 잔여일수에 5일 이상을 가산하여 공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종합건설본부 총무부에서는 발주자의 당초 입찰공고 오기로 인한 정정공고(공사 4건, 용역 5건)를 시행함에 있어 지방계약법 시행령 규정에 의거, 공고기간 잔여일수에 5일 이상을 가산하여 정정 공고 해야 함에도 당초 공고기간으로 정정공고 하는 등, 입찰공고 업무를 소홀이 한 사실이 있습니다.

[처 분 요 구]

1. 입찰 공고한 내용에 관련 법령의 오기 등 경미한 하자가 있어 정정 공고를 하는 경우에는 공고기간의 잔여일수에 5일 이상 가산하여 공고토록 관련 법규정이 개정(2007. 9.20.)된 사항은 발주자의 오류로 인한 계약분쟁을 사전에 예방함과 입찰공고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것인 만큼, 업무연찬을 통하여 향후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 11]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부서기관명] 종합건설본부 총무부

[행정상 조치] 주의

[재정상 조치]

[신분상 조치]

[제 목] 하도급업체 대가지급 관련

[위법부당내용]

1. 하도업체 선금 지급여부 미확인

지방자치단체 계약체결·이행에 따른 선금 및 대가 지급요령 및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에 따르면 원도급자가 발주자로부터 선금금을 받은 때에는 선금의 내용과 비율에 따라 지급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수급사업자(하수급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며, 계약담당공무원은 선금지급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하수급자에게 선금의 배분여부를 확인하도록 되어 있으며, 원도급자가 하수급자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선금을 적정하게 배분하지 않은 경우에는 반환된 선금을 하수급자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종합건설본부에서는 2006. 3.23. 공사대금 226,713,740천원에 “송도해안도로 확장공사”를 계약하여 시행하면서 원도급자인 (주)○○○설의 선금 신청에 따라 선금 47,385,855천원을 3회에 걸쳐 지급함에 있어 지급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하수급자에 대한 선금배분 여부를 확인하고 적정 지급되도록 관리하였어야 함에도 2006년, 2007년 선금은 사용내역 제출시까지, 2008년 선금은 감사일 현재까지도 하수급자 선금배분여부 확인을 소홀히 한 사실이 있습니다.

2. 하도업체 기성금 지급여부 미확인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1항에 의하면 수급인은 도급받은 건설공사에 대한 기성금을 받은 때에는 하수급인이 시공한 분에 상당한 금액을 지급받는 날부터 15일 이내에 하수급인에게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자치단체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45조에 의거,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지급 청구시 기 수령한 기성대가가 있는 경우에는 기성대가를 하수급인에게 지급하였음을 증빙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발주부서에서는 이를 확인하여 원도급자에게 지급된 기성금이 하수급인에게 정확히 배분되었는지 여부를 검토하였어야 함에도,

종합건설본부에서는 “송도해안도로 확장공사”에 대한 기성금 31,625,045천원을 7회에 걸쳐 지급함에 있어 매회 기성금 청구시마다 전회 기성금의 하수급자 배분여부를 확인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습니다.

3. 하도업체 대금 지급방법 부적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에 의하면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선금금을 받은 때에는 선금금의 내용과 비율에 따라 선금금을 지급받는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선금금을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1항에서도 수급인은 도급받은 건설공사에 대한 기성금을 받은 때에는 하수급인이 시공한 분에 상당한 금액을 지급받는 날부터 15일 이내에 하수급인에게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제4항에 의하면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지급함에 있어서는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지급받은 현금비율 미만으로 지급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발주자로부터 전액 현금으로 지급받는 공사의 기성대가에 대하여는 하도급 대금 지급시 전액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송도해안도로 확장공사”의 공동도급사인 (주)○○○설, ○○○설(주), ○○○설산업(주)에서는 당해 공사를 시행하면서 선금 및 기성금 79,010,900천원을 10차례에 걸쳐 현금으로 수령하였으나, 하도업체에 대금 지급시 선금을 제외한 기성금 및 준공금을 현금이 아닌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 또는 어음으로 지급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하도급업체에 대하여 부적절한 방법으로 대가지급이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종합건설본부 회계팀에서는 이에 대한 관리·감독에 소홀한 사실이 있습니다.

[처 분 요 구]

1. 하도급 공사에 따른 하도대가 지급에 있어 관련규정을 면밀히 검토하여 적법하게 공사대가가 하도업체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 12]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부서기관명] 종합건설본부 토목부

[행정상 조치] 시정(주의)

[재정상 조치]

[신분상 조치] 훈계(2명)

[제 목] 종합감사 결과 처분요구 사항 조치 부적정

- 2006년 종합건설본부 종합감사결과 처분요구 사항 중 조치 부적정 내역
 - 처분요구 8 : 사용자 재산 사용료 부과 부적정
 - 처분요구 21 : 장수천 자연형하천 2단계 조성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부적정

[위법부당내용]

- ▶ 종합감사결과 시정요구한 사항에 대한 조치가 일부 누락되거나 조치가 미흡함에도 종결된 것으로 처리하거나 주의 촉구한 사항을 반복하여 위반하는 등 처분요구 사항에 대한 사후관리가 부적정함

* 관련근거 : 「행정감사규정」, 「인천광역시 자체감사규칙」 등

위 규정에 따라 수감기관에서는 종합감사 결과 처분요구 받은 사항 중 시정 또는 개선요구 받은 사항에 대하여는 처분요구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2개월 이내에 조치가 어려운 사항에 대해서는 완료될 때까지 미결조서를 작성, 관리하여야 합니다.

또한, 주의를 촉구 받은 사항에 대해서는 동일한 위반사항이 재발되지 않도록 업무연찬 등을 실시하는 한편, 담당자 인사발령 시에 인수·인계를 철저히 하여 동일한 위반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종합건설본부에서는 2006년도 종합감사 결과 행정상 조치 : 27건(주의 12건, 시정 12건, 개선 3건), 재정상 조치 : 감액 등 5건 25,815천원, 신분상 조치 : 훈계 4명 등의 처분을 받았는바, 일부 조치가 누락되거나 미흡함에도 종결된 것으로 처리하거나 동일한 사항을 계속해서 위반하는 등의 부적정한 행위가 확인되었습니다.

1. 공유재산에 대한 사용허가 시에 임대료 산출기준을 잘 못 적용하여 주의를 받았음에도 계속하여 부적정한 임대료 산출기준을 적용하여 세외수입 감소 초래

공유재산에 대한 사용허가 시에 임대료 산출기준은 「인천광역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25조 규정에 따라야 하고, 3층 이상의 경우 1/2 감면을 하여주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종합건설본부에서는 본부 부지내 “○○○행 출장소”가 1층 단독 건물임에도 본관에 부속된 건물이라는 이유로 3층 이상으로 부적정하게 적용, 임대료를 1/2 감면하여 주다가 2006년도 종합감사 시에 주의처분을 받았음에도,

2008년 금번 종합감사 시에 동 사항을 다시 확인한 결과 여전히 임대료를 부적정하게 1/2 감면하여 주고 있음이 확인되었습니다.

2. 용역을 추진함에 있어 관련분야 전문가가 부족하여 총원토록 시정요구를 받았으나 동 보완 사항이 미흡함에도 종결된 것으로 처리

종합건설본부에서 2006. 3월부터 같은 해 8월까지 수행한 “장수천 자연형 2단계 조성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하면서 당시 입찰 참가자격을 “수자원 개발분야 신고업체”로 제한하였으면 당연히 관련 분야 전문가들이 다수 참여하여 용역을 수행하여야 하나, 착공 당시에 수자원개발 분야 기술자가 1인(그 것도 당해 분야 용역 참여경력만 보유) 뿐인 관계로 관련 분야 전문가나 기술자를

총원토록 시정요구를 받았으나,

종합건설본부에서는 처분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제출하면서 관련 분야 기술자를 3인 총원하였다고 하였으나, 이행실태를 확인한 결과 3인 중 1인은 착공 당시 참여자로 확인되었고,

더욱이 나머지 2인도 관련분야 자격이 없어 단지 용역업체에서 제출한 관련분야 용역 참여경력만 첨부하여 제출하였음에도 보완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종결된 것으로 처리하였습니다.

* 오히려 장수천보다 1년~2년 전에 수행한 “굴포천, 승기천, 공촌천” 자연형 하천 조성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의 경우에는 해당 분야(수자원개발) 전문가(기술사, 기사 등)가 평균 5~6인 이상 참여하였음이 확인됨

[처 분 요 구]

1. 감사결과 처분요구사항에 대하여는 이행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라며, 향후 이와같은 사례가 재발될 시에는 엄중 문책하게 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금회에 한하여 관련자 “훈계” 처분

2. 향후 각종 용역을 추진함에 있어 입찰참가 자격을 특정분야 등록 업체로 제한한 경우에는 해당 분야 전문가를 확보토록 조치하시고, 특히 각종 감사결과 보완요구 받은 사항에 대해서는 형식적으로 조치하는 일이 없도록 각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동 건에 대해서는 수자원개발 분야 자격증이 기술사만 있고, 당초 용역비(약 93백만원)로 기술사 1인을 추가 배치함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을 감안 금번에 한하여 엄중 주의를 촉구하오니 동일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각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 13]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부서기관명] 종합건설본부 총무부·토목부

[행정상 조치] 주의

[재정상 조치]

[신분상 조치]

[제 목] 문화재 시굴조사 용역 추진 부적정

[위법부당내용]

- ▶ 용역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당해 사업의 당위성, 주변 여건, 사업일정 등을 면밀하게 검토한 후 예산을 편성·운용하여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함으로써 2006년 및 2007년 연속적으로 추경예산을 확보·반납하는 등 용역사업 추진 및 예산편성·운용 부적정

* 관련근거 : 「지방재정법」, 「예산회계법」, 「문화재보호법」 등

종합건설본부에서는 『금곡~김포시계간 도로개설공사』를 추진하면서 관계법령에 따라 “문화재 지표조사”를 실시하였고(○○대학교 용역 수행, 2005.10), 그 결과 구석기 시대 유물이 3점 발견되자 동 사실을 시(문화예술과)를 경유하여 문화재청에 보고하였으며, 문화재청에서는 2005.12.2. 문화재 보존대책을 통보하면서 동 지역에 대한 문화재 시굴조사를 실시하여 보존대책을 수립할 것을 권고하였고, 종합건설본부에서는 2006.3월 용역심의를 거쳐 2006.5.17. 조건부로 용역심의를 득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종합건설본부에서는 2006년 1회 추경예산에 시굴조사 용역사업비를 30,000천원 확보하였으나, 토지주들에게 토지사용 승락을 징구하는 과정에서 토지주들의 반발로 용역을 추진하지 못하였는바, 당해 회계연도에 예산집행이 불가하다면 마땅히 예산을

삭감시키거나 다음 회계연도로 명시이월을 하여 예산편성 및 운용의 효율성을 피하여야 함에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있다가 2006년말 동 예산을 반납하였고,

더욱이, 2006년도에 위와 같은 시행착오를 겪었으면 2007년도 용역 예산을 편성·운용할 때에는 적정을 피하여야 함에도 2007년 1회 추경에 이르러서야 25,000천원의 예산을 확보하였고, 이 역시 토지주들의 사용승락 불응과 검단신도시 지구지정 등의 이유로 더 이상 용역추진이 불가하자 2008년도 예산으로 이월하는 등 용역사업 추진 및 관련 예산의 편성·운용을 부적정하게 한 사실이 있습니다.

[처 분 요 구]

1. 향후 각종 용역을 추진코자 할 때에는 사전에 용역사업의 당위성, 주변여건, 사업일정 등을 면밀하게 검토한 후 예산을 편성·운용하되, 일단 확보된 사업비는 당해 회계연도 내에 집행토록 하고, 부득이 용역을 추진하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할 경우에는 예산을 삭감하거나 명시이월 하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 14]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부서기관명] 종합건설본부 총무부·도로관리부

[행정상 조치] 시정·개선

[재정상 조치]

[신분상 조치] 훈계(2명)

[제 목] 과적차량 단속장비 구입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종합건설본부에서는 본부장 및 도로관리부장을 중심으로 도로, 교량 등의 시설물 유지관리, 과적차량 단속 등의 어려운 과업을 예산 및 인력부족, 화물연대파업 등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충실히 수행하고 있으며,

- 특히, 과적차량 단속업무는 화물차주의 위법행위를 적발, 직접 조서를 작성·검찰에 송치하는 업무로써 대다수의 공무원들이 기피하는 업무임에도 도로관리운영팀장을 중심으로 열심히 단속 등의 업무를 추진함으로써 과적행위의 근절 및 도로시설물 유지관리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 2008. 5월 단속실적 : 총 6,383대 검차, 적발 및 송치 95대(적발을 1.49%), 야간단속 22회(검차 260대, 적발 10대)

* 위 공적을 감안, 금번 감사결과 과적차량 단속요원 중 2인을 표창코자 함

○ 그러나, 단속장비 구입 및 유지보수 용역 등 일부 관련 업무를 추진하면서 아래와 같이 위법·부당한 행위가 확인되었기 개선방안을 마련토록 조치코자합니다.

[위법부당내용]

1. 과적차량 단속장비를 구입함에 있어 관계법령이 개정된 사실을 간과하고 납품시기를 촉박하게 정하여 공고하는 한편, 특정업체에서만 수입·판매가 가능한 기종을 선정·구매했다는 이유로 타 경쟁사로부터 민원야기

* 관련근거

- 「계약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시행규칙 등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규칙 등

종합건설본부에서는 2007.9.11. 과적차량 단속 장비인 “이동식 축중기(축중기 10개, 인디케이터 2조, 81,891천원 상당)”를 구입하면서 조달청에 구매를 의뢰하였는데, 2007.8.31. 축중기 구입에 앞서 자체 검토한 제품사양 비교검토 보고서를 보면,

당시 보유하고 있는 축중기[총 5조 11대 : SAW-300/10C(독일제품) 3조(7대), RW-15X(국산) 1조(2대), EC-100(스위스 제품) 1조(2대)] 중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고, 또한 단속요원들이 동 제품을 가장 선호한다는 이유로 “SAW-300/10C”를 구입하는 것으로 방침을 득하고 조달청에 구매 의뢰하였는바,

이에 2007.10.1. 서울 구로구 소재 유관 업체인 “○○○○○○(주)”에서는 “기술사양을 결정함에 있어 외형크기를 위주로 하는 것과 축중판이 통합로드셀 1개로 되어야 한다는 점” 등은 특정업체를 지명하는 것이고,

또한, “축중판 고장시에도 1개를 모두 교체한다는 것은 예산낭비이며, 동 사양의 규격은 ○○○○○○에서 수입하는 제품으로서 타 사에서는 구입이 불가능한 제품”이라는 등의 이유로 이의를 제기하였으나,

종합건설본부에서는 “2006년도에 부산광역시 건설안전시험사업소에서 본 구입시방서와 유사한 크기(805mm × 508mm) 및 통판 로드셀 방식으로 구매 입찰하여 3개 업체가 참여한 사례가 있다.”는 이유로 당초대로 사양을 선정, 구입한 사실이 있습니다.

* 감사기간중 조달청 “나라장터”를 통하여 2006. 3월경 부산광역시 건설안전시험사업소에서 유사한 크기의 통판 로드셀로 구성된 축중기 입찰구매 내역을 확인하였고, 개찰결과 3개소가 응찰하여 “○○○○○○○○(주)”가 1순위 업체로 낙찰됨을 확인함

아울러 위와 같이 축중기 등을 구입하면서 입찰·공고를 함에 있어 납품기한을 30일로 정하여 공고를 하였으나, 당시 관계법령의 개정(2006.9.4. 개정, 유예기간 1년 포함 2007.9.4.부터 적용)으로 “이동식 축중기”가 새로이 사전 형식승인을 득하는 물품으로 포함됨에 따라 2007.9.4. 이후 제작 또는 수입되는 제품에 대해서는 형식승인기관으로부터 사전에 형식승인 및 검정을 받아야 하며,

이러한 절차를 밟는데 최소한 3개월 이상이 소요되므로 납기일을 4개월 이상 충분하게 주어야 함에도 이를 간과하고 납품 기한을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로 부적정하게 부여한 사실이 있습니다.

* 동 업체에서는 2차례에 걸쳐 납품기한 연기 신청을 하였고, 결국 이를 지키지 못하여 종합건설본부에서는 조달청에 계약해지를 요청하였으며, 조달청에서는 동 업체를 부정당업자로 제재조치를 취하여 결과적으로 2순위 업체인 “○○○○○”과 수의계약을 체결·구매하였음

2. 과적차량 단속장비 유지보수 용역을 추진함에 있어 당해 자격요건에 부합하는 업체가 극소수임을 인지하고 있으면서도 입찰참가 자격을 과다하게 제한함으로써 다수의 참여기회를 배제하고 특정업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결과 초래

아울러 종합건설본부에서는 기 설치되어 있는 고정식 축중기 6조(만석A·B, 향동, 신흥, 강화 A·B) 및 이동식 축중기 5조(11대)에 대한 유지관리 보수 위탁용역을 추진함에 있어 2007.2.14. 입찰 공고 시에 입찰참가 자격을 “고정식 축중기 설치실적이 있으며, 엔지니어링 활동주체 또는 정보통신공사에 등록된 업체”로 제한하였고,

그 결과 5개 업체가 응찰하였으나, 이 중 고정식 축중기를 설치한 실적을 보유한 업체는 “○○○○○○(주)”와 “○○○○○○○○(주)” 단 2개 업체로서 “○○○○○○○○(주)”는 예정가격의 87.745% 미만으로 투찰하여 탈락되고 최종적으로 “○○○○○○(주)”이 낙찰되어 계약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한편, 종합건설본부에서는 2008년도 축중기 유지·관리 보수용역을 추진함에 있어 2008.2.5. 입찰공고를 하면서 입찰참가 자격을 “고정식 축중기 설치실적 또는 고정식 축중기 유지보수 위탁관리 용역 실적이 있으며, 엔지니어링 활동주체(정보통신) 또는 정보통신공사에 등록된 업체”로 자격제한을 일부 완화시켰는데,

이에 대하여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인천·경기도회”에서는 동 용역이 「정보통신공사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정보통신공사에 해당하므로 정보통신공사에 한하여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할 것을 요청하였고, 반면 “한국엔지니어링진흥협회” 측에서는 동 용역은 정보통신공사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고, 단순히 유지·보수를 하는 용역이며 동 행위는 엔지니어링 활동중 정보통신 분야에 해당하므로 “엔지니어링 활동주체(정보통신 분야)”만 참가자격으로 제한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으며,

이에 종합건설본부에서는 2008.2.12. 입찰공고를 취소하고(입찰마감일 2008.2.13) 내부검토를 거쳐 2008.3.10. 최종적으로 입찰참가 자격을 “고정식 축중기 2개소 이상 설치 실적 또는 고정식 축중기 2개소 이상 유지보수 위탁용역 실적이 있는 업체로서 정보통신공사에 등록된 업체”로 결정·공고를 하였는바, 동 용역의 경우 물론 축중기 등 장비고장 시에 신속한 정비·수리 등을 위하여 설치실적 또는 유지보수 실적을 보유한 업체로서 “정보통신공사에” 등록된 업체에 위탁하는 것이 효율적이라 판단되나,

「정보통신공사법」,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을 면밀히 검토하여 보면, “고정식 축중기 설치실적”을 보유하고 있는 업체는 전국에 단 3개(○○○○○○○, ○○○○○○○○, ○○○○○○○○○○○)로서 현실적으로 입찰의 취지가 퇴색되었고,

더욱이 입찰참가 자격을 “정보통신공사에”으로 제한한 것은

“단순한 정보통신시설 유지·보수 행위”를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정보통신공사”로 확대 해석하여 과도하게 제한함으로써 다수의 참여기회를 배제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고 판단됩니다.

3. 축중기 유지보수 용역을 추진하면서 2순위 업체로 선정된 업체가 적격심사대상으로 선정되어 심사서류 제출 후에 정당한 이유 없이 낙찰자 결정전에 심사를 포기하였음에도 관계법령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함

아울러 종합건설본부에서는 위와 같이 2008년 축중기 유지보수 용역을 추진함에 있어 1차 입찰 공고 시에는 개찰결과 3개 업체(○○○○○○○, ○○○○, ○○○○○ 시스템)가 응찰하였으나 모두 낙찰하한선 미달로 유찰되었고, 2차 입찰공고 시에는 4개 업체(○○○○, ○○○○○○○○○○○○, ○○○○○○, ○○○○○○○○○○)가 응찰하였으나, 1순위 업체인 협성엔티는 축중기 설치 또는 유지보수 실적이 없어 적격심사 서류 제출 전에 계약을 포기하였으며,

종합건설본부에서는 2008.3.25. 1순위 업체의 포기로 자동적으로 적격심사 대상자로 선정된 2순위 업체인 “○○○○○○○○○○○○○” 측에 심사 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구하였고, 이에 “○○○○○○○○○○○○○” 측에서는 2008.3.27. 용역 수행실적을 첨부하여 용역 적격심사 서류를 제출하였으나, 2008.3.31. 갑자기 내부사정상 용역수행이 어렵다는 이유로 계약을 포기하였는바,

이는 관계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적격심사 대상자로 선정된 업체가 적격심사 서류 제출 후에 정당한 사유 없이 낙찰자 결정전에 심사를 포기”한 행위로서 관계법령에 따라 입찰보증금 세입조치 및 부정당업자로 제재 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였어야 함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습니다.

* 결국 종합건설본부에서는 2007년 축중기 유지·보수 위탁용역을 수행하였던 “○○○○○○○” 과 2008년 유지·보수 위탁용역 계약을 체결함(2008.4.4. 계약체결)

4. 과적차량 단속 장비를 유지·관리함에 있어 관련지침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을 일부 이행치 아니함

한편, 「운행제한차량단속요령, 2004.12. 건설교통부」 제5조의2(단속 책임자의 임무)제2항제9호 규정에 의하면 “축중계의 교정검사 실시, 휴대용 축중계와 고정식 축중계의 상호 비교계측(주 1회 이상), 고정식 축중계 고장발생시 컨테식 축중계로 즉시 대체 및 단속 장비 유지 관리”사항을 준수하도록 되어 있으나, 종합건설본부에서는 위와 같이 단속장비 유지·보수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비교계측(주 1회 이상)에 대한 사항이 과업지시서에 누락되어 있고, 실질적으로 용역업체에서는 평균 월 1회 정도 점검요원을 현장에 투입하여 교정검사, 비교계측 등을 수행하는 것으로 확인되어 개선이 요구됩니다.

또한, 단속장비 유지보수 용역의 과업지시서를 보면, 수급자는 고장 발생 통보 후 4일 이내에 수리를 완료하여야 하고, 부품 구매 등 특수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에는 사전에 “수리기간 연장신청서”를 제출토록 하였음에도, 각 검문소별 장비 고장발생 보고, 내부결재 및 수리의뢰, 수탁기관의 수리 및 조치결과 보고 등 일련의 절차를 확인한 결과 대부분 이러한 과업수행 조건이 충족되지 않고 있음이 확인된바, 이에 대한 개선이 요구됩니다.

특히, 항동검문소의 경우 2008.6.27. 로드셀 파손으로 고장발생 통보 이후 감사종료일(2008.7.4)까지 수리가 완료되지 않았음에도 용역업체에서는 “수리기간 연장신청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또한 고정식 축중기 고장으로 단속을 실시할 수 없을 경우에는 즉시 이동식 축중기를 설치하여 단속을 실시하여야 함에도 감사기간 내내 동 검문소를 운영하지 아니하고 만석 A·B 및 신흥 검문소만 운영한 사실이 있습니다.

5. 기타 과적차량 검문소 운영실태와 관련 중·장기적으로 개선이 요구됨

아울러, 과적차량 검문소 운영실태를 살펴본 결과, 강화 초지 검문소의 경우에는 지속적으로 단속을 실시하지 아니하고, 주 1회 정도 단속요원들이 현지에 출장하여 단속을 실시하고 있는바, 비록 교량 건설업체에서 2003년에 단속장비를 설치한 후 시에 기부채납하였다고는 하나, 사실상 검문소로서의 위치가 부적정하다고 판단되고(* 실질적으로 과적차량의 운행이 거의 없음),

신흥 검문소의 경우에는 서해안 고속도로 초입부분(용현 갯골수로 상단)에 위치하고 있어 심야 시간대를 제외한 대부분의 시간대별로 차량이 밀려있어 단속을 실시하기가 매우 어려우며, 실질적으로 과적 단속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검문소는 항동 검문소와 만석 A·B 검문소 3개소뿐이므로 중·장기적으로 고정식 축중기 설치위치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며, 아울러 강화 초지, 신흥 검문소는 운영을 축소하는 한편, 이동식 축중기를 활용하여 설치연도가 오래 되어 노후화된 고가교나 교량을 중심으로 단속 활동을 전개하는 등의 개선방안을 마련·시행함이 요구됩니다.

[처 분 요 구]

1. 과적차량 단속장비를 구입할 경우에는 납품시기를 4개월 이상 충분하게 부여하고, 특정업체에서만 구입이 가능한 기종을 선정·구매함으로써 민원이 야기되는 일이 없도록 각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2. 과적차량 단속장비 유지보수 용역을 추진코자 할 때에는 입찰참가 자격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일이 없도록 하되, 특히 축중기 설치 실적을 보유한 업체가 전국에 3개 업체 뿐인 점을 감안,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함에 있어 관계법령을 면밀히 검토함은 물론, 타 시·도나 타 기관·공사 등의 사례를 참고하여 발주하시기 바랍니다.
- * 참고로 2008.3.13. 예산국도관리사무소에서 발주한 축중기 위탁관리용역 입찰공고문을 보면, 입찰참가 자격을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2조 규정에 적합한 자”로 제한하였음

3. 2008년 축중기 유지보수 용역 입찰 당시 낙찰자로 선정되었음에도 심사서류 제출이후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업체에 대하여는 입찰보증금 세입조치, 부정당업자 제재 등 관계법령에서 규정한 조치를 이행하시기 바랍니다.
4. 축중계의 교정검사와 관련, 귀 본부의 의견을 검토한 결과 주 1회 이상 비교계측을 하도록 한 규정은 현실적으로 이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되는바, 용역업체로 하여금 월1회 이상 비교계측을 확행토록 조치하시고,
 - * 기타 축중기 등 고장발생시 4일 이내 수리, 동 기한내에 수리가 어려울 경우 “수리기간 연장신청서” 제출 등 관련지침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이나 과업지시서에 명시된 사항에 대해서는 용역업체로 하여금 반드시 준수토록 감독업무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5. 과적차량 단속을 함에 있어 효용이 떨어지는 신흥검문소, 강화 초지 검문소는 장기적으로 이동 또는 운영축소 등의 방안을 강구하시고, 아울러 이동식 축중기와 증원인력을 적극 활용하여 노후화되어 재난 시설로 등록된 교량을 중심으로 실질적인 단속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 15]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부서기관명] 종합건설본부 총무부

[행정상 조치] 시정

[재정상 조치] 추징(5,137,460원)

[신분상 조치] 훈계(1명)

[제 목] 공유재산 사용료 부과 부적정

[위법부당내용]

○ 인천광역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31조제1항에 의하면 건물의 대부료 산출에 있어 재산평가액은 건물평가액 및 부지평가액을 합산하여 결정한다고 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제1항의 부지평가액은 건물의 바닥면적 이외에 건물의 사용자가 전용으로 사용하는 토지를 대상으로 결정한다고 하면서 다만 경계가 불명확하여 전용면적 산출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건축법에 의한 현재의 건폐율을 역산하여 건물이 속한 부지면적을 산출하여 평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3항에서는 부지평가액을 산출할 때 건물 층별로 서로 다른 경감율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1층 건물의 경우에는 경감율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지상 3층 이상 건물의 1층을 대부하는 경우에는 부지평가액의 2분의 1을 경감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2006년도 종합건설본부 종합감사 시, 신한은행 출장소는 단층 건물이기 때문에 경감율 2분의 1을 적용하여 부지를 평가한 것은 부적절하다고 지적하면서 향후 공유재산 사용허가시 사용료 산정 업무를 관련규정에 의거 처리하도록 처분요구 하였습니다.

그러나, 종합건설본부에서는 2007년도 신한은행 출장소 건물에

대한 사용료 산정시 2006년도 시 종합감사에서 지적한 사항을 반영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경감율을 적용하여 산출함으로써 사용료 5,137,460원을 부과누락 하였는데, 2006년도 사용료 산정시 공용면적으로 포함하지 아니한 에이동 건물의 1층 화장실 등을 2007년도 사용료 산정시 공용면적으로 추가하고 에이동 건물과 공동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행 출장소 건물을 에이동 건물의 부속건물인 3층 이상의 1층 건물로 보아 경감율 2분의 1을 적용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행 출장소 건물은 건축물관리대장에도 별도의 씨동 건물로 구분표시하고 있고, 공유재산 사용료 산정의 산출근거가 되는 건물 감정평가서에도 단층 건물로 평가되고 있음. 따라서 부대시설(화장실 등)이 해당건물에 존재하지 아니하여 인접한 건물의 부대시설을 공동으로 사용한다고 하여 해당건물의 층수를 인접한 건물의 층수와 동일하게 판단하여 경감율을 적용하여 부지를 평가한 것은 명백한 잘못이 있습니다.

[처 분 요 구]

1. 공유재산 사용료 산정·부과시 누락된 5,137,460원을 부과조치 하시기 바랍니다.
2. 향후 ○○○행 출장소 건물에 대한 사용료 산정시에는 경감율(2분의1)을 적용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라며, 동일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법령연찬 등 직원교육을 실시하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 16]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부서기관명] 종합건설본부 토목부

[행정상 조치] 시정

[재정상 조치] 감액(374,000천원)

[신분상 조치]

[제 목] 초지대교~인천간 도로개설공사(2-1공구) 관련

[위법부당내용]

○ 책임감리는 건설기술관리법 제27조 및 건설기술관리법시행규칙 제34조의 규정에 따른 감리업무 수행지침서에 의거 발주청의 감독 권한을 대행하는 것으로서 공사시방서, 설계도서, 현장설명서 등을 충분히 검토하고 설계서의 적정 여부를 확인하여 공사 수행하여야 하며 변경요인이 발생한 경우에는 공사계약일반조건(회계예규)에 따라 설계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종합건설본부 토목부에서는 초지대교~인천간 도로개설공사(2-1공구)에 대하여 (주)○○○○○○와 전면책임감리용역계약을 체결하여 공사를 시행하면서 다음의 사항에 대한 검토 및 조치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습니다.

1. 쇄석말뚝공과 관련하여

본 공사에서는 연약지반활동 및 교대측방이동 방지를 목적으로 쇄석말뚝공을 시공하였고, 시방서에 의거 쇄석말뚝타설 후 말뚝 양쪽으로 2공을 시추하여 Cross-Hall Test 등의 탐사를 실시(측방이동 방지용 : 2회/교대, 연약지반 활동방지용 : 1회/500공)하여 쇄석말뚝의 설계 직경(700mm)을 확인하고자 2008.04.04일 감리단이 실정보고를 하였고,

2008.04.18일 종합건설본부에서 승인을 하였습니다.

승인과정에서 보면 감리단은 “쇄석말뚝공의 품질시험비(Cross-Hall Test)가 쇄석말뚝공의 시공비에 비해 고가인 단점이 있어 시험 횟수를 조정(12회→ 8회)하는 것이 예산절감차원에서 유리함”을 보고하고, 또한 시험비가 내역에 없어, 연구개발비(PS단가)를 사용(36,000천원) 토록 승인요청을 하였으며, 종합건설본부 토목부에서는 시방규정대로 시험하도록 승인함으로써 시험비 54,000천원을 승인하였습니다.

그러나 연구개발비는 계약목적물을 시공하는데 직접 필요한 기술 개발비 및 연구비로써 시험 및 시범제작에 소요되는 비용 또는 연구 기관에 의뢰한 기술개발비와 법령에 의한 기술개발촉진비 등을 말하므로, 완성된 제품의 단순 품질시험비의 항목으로는 집행될 수 없으며,

또한 쇄석말뚝공의 품질관리는 시공단계 및 지반검측 장치에 의거 지반안정 등의 검측이 가능함으로 고가의 Cross-Hall Test를 이용하여 설계직경을 확인하는 사항은 불필요 하다고 판단됩니다.

아울러 본 시방규정 중 품질관리에 영향이 없는 사항은 적절한 검토를 거쳐 변경이 가능함에도 이에 대한 검토없이 실정보고를 승인함에 따라 54,000천 원을 낭비할 우려가 있습니다.

2. 고성토구간의 동상방지층 삭제

성토구간에서 노상재료가 양호할 경우 2m이상의 성토구간에서는 동상 방지층을 생략하여 경제적인 도로건설을 할 수 있음에도 2m 이상 성토구간에 동상방지층을 설치토록 되어 있어, 동상방지층을 제거할 경우 320,000천원의 감액이 가능한 사실이 있습니다.

3. 암거 뒷채움 삭제

국도건설공사 설계실무 요령에 의하면 암거의 뒷채움은 도로횡단면과 위치관계를 고려하여 암거 상단이 노상 마무리면에서 1.2m 이상인

경우는 되메우기로 하고 뒷채움과 동등한 수준으로 다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동 공사는 압거 4개소 중 1개소의 압거 상단이 노상 마무리면에서 1.2m 이상으로서 뒷채움이 필요 없음에도 뒷채움재를 반영한 사실이 있습니다.

[처 분 요 구]

1. 쇠석말뚝공의 품질관리는 시공단계 및 지반검측 장치에 의거 지반 안정 등의 검측이 가능함으로 고가의 Cross-Hall Test를 이용하여 설계직경을 확인하는 불필요한 시방규정은 설계사 및 비상주 감리의 검토를 거쳐 변경하시기 바라며,
2. 고성토구간의 동상방지층 및 압거 뒷채움재를 설계변경 시 삭제토록 하고, 앞으로 유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관련자에 대하여 지속적인 업무연찬과 각별한 주의를 촉구하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 17]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부서기관명] 종합건설본부 토목부

[행정상 조치] 시정

[재정상 조치]

[신분상 조치]

[제 목] 쌍용아파트~신기파출소간 도로개설공사에 관하여

[위법부당내용]

○ 종합건설본부 토목부에서는 쌍용아파트~신기파출소간 도로개설공사를 2003.02.17일 실시계획인가를 받아, 2003.08.04일 제1차분 손실보상 협의의 통보를 한 이후 보상협의를 추진하였으며, 2005.05.13일 공사를 착수하여 06.07.31일까지 보상관련 문제점이 발생된 남광 로얄아파트 상가 부분을 제외한 구간의 공사를 완료한 후 임시개통을 하고 공사 중지를 하였습니다.

남광로얄 아파트 상가는 2005.10.28일 건물에 대한 수용재결 신청을 하여, 2006.04.12일 아파트 상가건물 손실보상금 지급 및 공탁 완료 하였으나, 2006. 05.12일 아파트 비대위촉 상가철거 반대 및 민원이 발생되어, 2007. 05월까지 1년 동안 공유지 분할 및 건물철거에 대한 주민과의 협의 및 동의를 구하고자 하였으나 불가하여, 2007. 06월에 공유지분할청구소송 관련 법률자문을 받아 동 보상물건이 아파트 단지내 상가로서 공유물분할이 필요하며, 주민들에게 공유지분 추가 보상이 필요한 상황으로 협의취득이 불가함으로, 실시 계획(변경) 인가 고시하여 남광 로얄아파트 전체 공유자 269세대에 대하여 수용재결에 의해 대지권을 취득하고 공유물 분할 신청하여 지적정리 후 공사추진키로 결정하였으며, 2008. 01월부터 감사일 현재까지

실시계획 변경인가 신청, 실시계획변경인가, 보상물건 열람공고, 감정평가, 손실보상 협의 안내를 하였습니다.

감사일 이후 앞으로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재결을 신청하여, 수용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경료 후 공사재개를 할 계획이나 감사일 이후 최소 3~6개월 소요되어 2008년 공사착수 및 완료가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현 상황과 관련하여 종합건설본부 총무부에서는 민원발생 시부터 해결방안을 적극적으로 도출하여야 함에도 1년이 지난 2007. 06월에서야 협의취득이 불가하다는 결론을 도출하는 등 업무추진에 소홀함이 있었으며,

토목부에서는 2006. 07월 공사중지 이후 2년이 경과된 시점까지 도로공사 및 폐기물처리 용역 등에 대하여 공사중지 상태에 있고, 건축부도 가로등 공사를 공사중지 상태로 유지하고 있는바,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54조(공사의 일시정지)의 규정에 의하면 “공사중지기간 60일이 초과한 날의 잔여계약 금액에 초과한 일수 매1일마다 시중은행 일반자금대출금리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준공대가지급 시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도록 되어 있어, 향후 추가비용의 지출 등 문제점을 감안할 경우 타절 준공 등의 적절한 조치를 하였어야 함에도 감사일 현재까지 공사 중지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사실이 있습니다.

[처 분 요 구]

1. 현재 공사중지 상태에 있는 공사들에 대하여 타절준공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2. 앞으로 유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관련자에 대하여 지속적인 업무연찬과 각별한 주의를 촉구하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 18]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부서기관명] 종합건설본부 도로관리부

[행정상 조치] 시정

[재정상 조치]

[신분상 조치]

[제 목] 도로 유지관리 소홀

[위법부당내용]

- 종합건설본부 도로관리부에서는 도로법 제37조 및 도로의 유지·보수에 관한 규칙 제3조의 규정에 의거 매년 1회이상 유지·보수 계획을 수립하여 도로포장공사(도급 또는 직영), 차선도색 및 맨홀 보수공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1. 도로유지관리현황 GIS입력관리 소홀

도로유지관리의 적정관리 및 자료구축을 위하여는 도로유지보수 관련 공사현황을 노선별로 관리하거나, 별도의 관리방안을 강구하여 체계적으로 관리를 함으로써 향후 도로유지관리 업무에 활용가능토록 하여야 하며, 특히 공무과 자체적인 자료구축이 어렵다면 국가 지리정보체계의구축및활용등에관한법률 제14조 및 인천광역시 지리정보체계의 구축 및 활용 등에 관한 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거 GIS시스템에 입력함으로써 데이터베이스가 구축되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도로관리부에서 2006년 및 2007년에 실시한 포장공사 중 도급시행공사(24개소)에 대하여 GIS 입력을 하였으나, 직영공사(56개소)는 입력을 하지 않는 등 관리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습니다.

2. 맨홀보수공사와 관련하여

도로관리부는 2006년 및 2007년에 재포장구간의 맨홀인상 등을 위해 단가계약을 체결하여 MR-2공법으로 294개소의 맨홀인상을 하였으나, 현장 샘플조사결과 2개소에서 균열이 발생한 사실이 있습니다.

3. 도로포장공사 시선유도시설 설치와 관련하여

시선유도시설은 도로부속물로서 주·야간에 직선 및 곡선부에서 운전자에게 전방의 도로선형이나 기하조건이 변화되는 상황을 안내하여 줌으로써 안전하고 원활한 차량 주행을 유도하는 시설물로서 도로안전시설설치 및 관리 지침에 의하여 설치 및 관리되어야 합니다.

동 지침에 의하면 도로표지병의 최소설치간격은 시가지 도로 직선부는 8m, 곡선부는 2~4m 등으로 규정되어 있고, 시선유도봉은 차량의 주행속도 및 설치목적에 따라 2~10m 범위 내에서 적절한 간격을 유지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도로관리부는 2008년 시행중인 열우물길 도로포장공사 외 1개소에 대하여 도로안전시설 및 관리지침의 규정보다 과다하게 도로표지병 및 시선유도봉을 설치하도록 시행중에 있는 사실이 있습니다.

[처 분 요 구]

1. 모든 도로포장공사(도급 및 직영)를 GIS시스템에 입력하여 도로유지 관리의 적정관리 및 자료구축이 될 수 있도록 하시고,
2. 2006년 및 2007년도 재포장구간의 맨홀인상분에 대하여 전수조사(하자검사)를 실시하여 하자보수하시기 바라며,
3. 열우물길 도로포장공사 외 1개소 및 향후 시행하는 공사에 대하여는 도로안전시설 및 관리지침에 따라 도로표지병 및 시선유도봉을 적정하게 설치하고,

3. 앞으로 유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관련자에 대하여 지속적인 업무연찬과 각별한 주의를 촉구하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 19]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부서기관명] 종합건설본부 총무부

[행정상 조치] 시정·주의

[재정상 조치]

[신분상 조치]

[제 목] 계약업무 제반규정 준수 소홀

[위법부당내용]

1. 건설공사대장 미 통보 업체 관리 소홀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제4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6조에 따라 도급 금액 1억원 이상인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업자는 건설공사의 도급계약 내용·공사진척상황·하수급인 현황 등을 기재하여 주된 영업소에 비치하는 건설 공사대장의 기재사항을 건설산업종합정보망을 이용하여 도급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발주자에게 통보 하도록 하고 있으며, 통보한 사항에 변경이 발생하거나 새로이 기재하여야 할 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건설 산업종합정보망을 이용하여 발주자에게 통보토록 함으로써 발주자가 건설공사수행상황을 손쉽게 알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건설공사대장 미 통보 건설업자에 대하여는 같은법 제99조 제3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89조제3항에 따라 1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발주자는 건설공사발주 시 건설공사대장 통보사실을 확인 하고, 미 통보업체에 대하여는 건설업체 관할 행정기관에 위법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그러한데도 종합건설본부 총무부에서는 2006~2008년 위 법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8개 건설업체에 대하여 관련 행정기관에 통보하지 아니하는 등 관련 업무를 소홀히 추진한 사실이 있습니다.

2. 기성 및 준공검사관련 감리업무 부적정

「책임감리업무수행지침서」 제57조(기성 및 준공검사 임명)제2항에 따라 감리전문회사 대표자는 기성부분검사원 또는 준공계를 접수 하였을 때는 3일 안에 소속 비상주감리원 중 고급감리원급(감리사급) 이상의 자로 2인 이상의 검사자를 임명하여 검사팀을 구성하고 이 사실을 즉시 본인과 발주청에 보고하여야 합니다.

그러한데도 종합건설본부 회계팀에서는 갯골 유수지주변 친수공간 조성사업 외 3건에 대하여 위 지침서에 위배 되게 기성부분 검사자를 1명으로 임명 통보 받고도 정상적으로 기성금이 지출되었으며, 가좌 하수처리장 고도처리 사업의 경우에는 기성검사자를 통보 받지 않고 기성금이 지출 되는 등 기성 및 준공검사관련 감리업무를 부정하게 처리한 사실이 있습니다.

[처 분 요 구]

1. 계약업무 관련 제반 규정을 철저히 준수하시기 바라며,
2. 도급금액 1억원 이상인 건설공사를 도급받고 계약 체결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건설공사대장을 통보하지 않은 건설업자는 관련 행정 기관에 통보하여 관련법령에 의한 처분이 되도록 조치하고
3. 앞으로 유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관계공무원의 지속적인 업무 연찬과 각별한 주의를 촉구하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 20]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부서기관명] 종합건설본부 토목부

[행정상 조치] 시정

[재정상 조치] 감액(13,000천원)

[신분상 조치]

[제 목] 교통 안전시설물(표지병) 설계 부적정

[위법부당내용]

○ 『도로안전시설설치및관리지침』에 의거 도로 표지병은 도로상에 설치된 노면표시의 선형을 보완하여 야간 또는 우천시에 운전자의 시선을 명확히 유도함으로써交通安全 및 원활한 소통을 도모하기 위하여 도로의 중앙선, 안전지대 등 노면표시의 기능을 보완할 필요가 있는 곳에 시가지 도로의 경우 2~8m, 노면 및 교통섬에 경우 2m로 설치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한데도 종합건설본부 토목부에서 시행중인 계산택지~박촌동간 도로 개설공사의 중앙분리대용 도로 표지병 설치에 대하여 관련 지침에 의거 현장 여건 등을 충분히 검토 후 2~8m로 설치하여야 하나 2m로 균등하게 1,664개를 설치토록 설계서에 계상되어 있어 『도로안전시설설치및관리지침』에 의거 설치하면 개략 724개 정도로 조정 설치할 수 있어 설치가 불필요한 940개를 미 설치시 개략 13,000천원 상당의 금액을 절감할 수 있는데도 감사일 현재까지 설계 변경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은 사실이 있습니다.

[처 분 요 구]

1. 향후 시행하는 도로개설공사에 대하여는 관련법령 부합 여부를 충분히 검토 후 추진함은 물론 공사감독 업무를 철저히 이행하여, 예산절감 및 품질관리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라며
2. 과다하게 계상된 개략 13,000천 원 상당에 대하여는 관련자와 협의하여 설계변경 감액 조치하고, 앞으로는 이와 같은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업무연찬 등을 통하여 관련 업무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 21]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부서기관명] 종합건설본부 토목부

[행정상 조치] 시정

[재정상 조치] 감액(104,000천원)

[신분상 조치]

[제 목] 분뇨·축산폐수 통합 하수연계처리시설 설치공사 설계변경
업무 소홀

[위법부당내용]

- 공사감독업무 담당공무원(책임감리원)은 사업추진시 현장여건을 충분히 파악하여 설계도서가 현장여건에 부합되는지 여부를 우선 파악하고 경제성, 시공성 등을 검토하여야 하며, 변경요인이 발생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공사계약 일반조건(행정자치부예규)에 따라 설계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상기 공사와 관련 토공사 중 발생하는 사토 114,962m³를 전량 외부로 반출토록 설계에 계상되어 있으나, 토사의 성상을 감안할 때 8,700m³는 현장내 유훑토(순성토 반입 29,556m³ 설계서 계상)로 활용하면 개략 104,000천원 상당의 예산을 절약 할 수 있는데도 공사감독(책임감리원)은 사토 공종률 90%인 감사일 현재까지 공사비의 절감을 위한 현장내 유훑토 활용 계획에 대하여 검토없이 공사를 추진한 사실이 있습니다.

[처 분 요 구]

1. 공사비 절감을 위한 현장내 유훑토 활용 검토를 소홀이 한 공사감독(감리원)에게 엄중 경고를 하시기 바라며

2. 향후 설계변경 및 계약금액 조정 시(계약금액 감액의 경우를 포함) 공사 계약문서 상호간의 모순되는 사항, 현장 실정과의 부합 여부, 변경 설계서의 누락·오류 등 불명확한 부분의 존재 여부 등을 세밀하게 검토 하여 예산이 낭비되는 사례가 없도록 공사감독(감리원)에게 설계변경 업무에 철저를 기하도록 지시하시기 바라며,
3. 또한 현장내 유훑토 활용으로 인한 개략 104,000천원 상당의 예산을 절약할 수 사항에 대하여는 관련자와 협의하여 설계변경 감액 조치하고, 앞으로는 이와 같은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업무연찬 등을 통하여 관련 업무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 22]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부서기관명] 종합건설본부 건축부

[행정상 조치] 시정

[재정상 조치] 감액(67,219천원)

[신분상 조치]

[제 목] 건축 시설공사 추진에 관한 사항

[위법부당내용]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공사 및 용역 등의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그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계약서·설계서 그 밖의 관계서류에 의하여 스스로 이를 감독하거나 소속공무원 등에게 그 사무를 위임하여 필요한 감독을 하게 하여야 하며,

공사원가계산서 작성은 『지방자치단체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작성 요령』에 의거 각 비목별로 정해진 체비율을 적용하여 계상되었는지 여부를 철저히 검토 및 확인함으로써 공사원가계산이 과다계상 또는 중복계상 되는 일이 없도록 설계용역 감독에 만전을 기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공사감독공무원(감리자)은 공사시방서, 설계도서, 현장설명서 등을 충분히 검토하고 설계서의 적정 여부를 확인하여 공사를 수행하여야 하며 변경요인이 발생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2조 및 지방자치단체 공사계약일반조건에 따라 설계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1. 영종도서관 건립공사 공사감독 소홀

《공 사 개 요》

○ 도 급 자 : ○○○○○○(주) 대표 ○○○

○ 계약금액 : 2,192백만원

○ 계약일자 : 2007. 03. 12

○ 준공기한 : 2008. 07. 01(공사기간 연장처리)

가. 결로 발생에 대한 원인규명 및 조치 소홀

영종도서관 건립공사 현장에 대하여 2008.06.27. 현장감사를 실시한 결과, 지하1층 보존서고 벽체에 결로가 발생되어 습윤상태로 되어 있는데도 시공자로 하여금 이에 대한 원인규명 및 필요한 보수조치 등을 취하지 않고 있는 등 공사감독 업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습니다.

나. 천정 텍스공사 시공불량에 대한 조치 소홀

지하1층 보존서고 천정의 텍스공사를 시행하였으나 텍스붙임 부분이 평활하지 않고 울퉁불퉁한 상태이며 나사못 머리가 텍스면과 일치되지 않고 볼록하게 튀어나와 있는 등 시공상태가 불량한데도 이에 대하여 재시공 명령 등을 취하지 않고 있는 등 공사감독 업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습니다.

2. 수봉도서관 건립공사 공사감독 소홀

《공 사 개 요》

○ 도 급 자 : (주)○○○○○○○ 대표 ○○○

○ 계약금액 : 3,626백만원

○ 계약일자 : 2007. 10. 29

○ 준공기한 : 2009. 01. 04

가. 설계변경(감액) 조치 소홀

(단 위 : 천원)

공 종	품 명	수량	순공사비	원가계산액	지적사항	비고
철근콘크리트공사	곡면거푸집	583㎡	7,086	8,165	유로폼공	
품질시험	골재	9건	3,043	3,302	불필요비대상	
	시멘트혼화재료	14건	632	686		
	레미콘	21건	2,310	2,632		
합 계			14,785천원			감액

유로폼으로도 시공이 가능한 부분을 곡면거푸집을 설치(583㎡)하는 것으로 설계가 되어 있으며 실제 현장에서도 유로폼으로 시공을 하고 있고, 품질시험비 중에서 현장에서 실시하는 자체시험의 경우에는 시험비용이 불필요한데도 레미콘의 슬럼프, 염화물, 공기함유량 시험을 위한 시험비용을 설계에 반영하는 등 14,785천원 상당에 대하여 감사일 현재까지 감액 설계변경(실정보고 승인) 등 행정조치를 취하지 않은 사실이 있습니다.

나. 균열발생에 대한 원인규명 및 보수조치 소홀

수봉도서관 지상1층 천정스라브에 미세한 균열(0.01mm)이 발생하여 현장에서 균열발생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관리를 하고 있으나 균열 발생 이후 감사일 현재까지 균열발생에 대한 원인규명 및 보수조치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습니다.

다. 낙하물방지망 미설치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9조의 규정에 의거 사업주는 작업장의 바닥·도로 및 통로 등에서 근로자에게 낙하물에 의한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때에는 보호망을 설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는데도, 감사일 현재 지상3층 부분의 철근배근 및 거푸집설치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데도 낙하물방지망을 설치하지 않고 공사를 시행하는 등 공사장 안전관리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습니다.

3. 송암미술관 리모델링 및 증축공사 공사감독 소홀

《공사 개요》

- 도 급 자 : ○○○○○○○○ 대표 ○○○
- 계약금액 : 2,997백만원
- 계약일자 : 2007. 12. 07
- 준공기한 : 2009. 02. 06

가. 설계변경(감액) 조치 소홀

(단 위 : 천원)

공 종	품 명	수량	순공사비	원가계산액	지적사항	비고
파일공사	콘크리트 파일	337m	7,326	8,576	미정산	
	파일항타	337m	2,231	3,012		
	경비	-	1,115	1,309		
가설공사	조립식실험실	78㎡	4,317	5,067	부족시공	
기계설비	TAB	1식	8,124	8,937	산식오류	
품질시험	레미콘	7회	669	785	비대상 불필요	
	골재	9종	637	748		
	시멘트	14종	549	644		
합 계			29,078천원			감액

기계설비 공사내역서의 TAB공사금액은 공사원가계산시 공급가액 하단에 계상을 하여야 하는데도 재료비, 노무비, 경비로 각각 계산하여 간접비 및 각종 제경비를 반영하였으며, 시험실 면적은 설계내역서에 100㎡를 설치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22㎡만 설치하였고,

파일공사 실시 후 실제시공 물량에 대한 미정산(337m) 및 품질시험비 중에서 현장에서 실시하는 자체시험의 경우에는 시험비용이 불필요한데도 레미콘의 슬럼프, 염화물, 공기함유량 시험을 위한 시험비용을 설계에 반영하는 등 29,078천원 상당에 대하여 감사일 현재까지 감액 설계변경(실정보고 승인) 등 행정조치를 취하지 않은 사실이 있습니다.

나. 균열발생에 대한 원인규명 및 보수조치 소홀

지상1층 및 지상2층 천정스라브에 미세한 균열(0.01mm)이 발생하여 현장에서 균열발생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관리를 하고 있으나 균열 발생 후 감사일 현재까지 균열발생에 대한 원인규명 및 보수조치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습니다.

4. 청소년수련관 기능보강사업 공사감독 소홀

《공 사 개 요》

- 도 급 자 : ○○○○○○(주) 대표 ○○○
- 계약금액 : 8,243백만원
- 계약일자 : 2007. 07. 23
- 준공기한 : 2009. 03. 14

가. 설계변경(감액) 조치 소홀

(단 위 : 천원)

공 종	품 명	수 량	순공사비	원가계산액	지적사항	비고
토 공사	압출스치로폼	1,450m ²	11,099	15,045	불 필 요 미 정 산	
	콘크리트 파일	52m	737			
	파일향타	52m	575			
	소 계		12,411			
철근콘크리트공사	원형거푸집	107m ²	4,242	5,860	유로폼 사용	
유리공사	방습거울	20m ²	882	1,139	중복계상	
품질시험	시멘트(응결시간)	2건	36	1,312	비 대 상 불 필 요	
	시멘트(압축강도)	2건	72			
	골재(비중, 흡수율)	2회	65			
	레미콘(슬럼프)	20건	555			
	콘크리트공시체	20건	420			
	타일(치수)	3조	38			
소 계		1,186				
합 계			23,356 천원			감액

지상1층 주차장 바닥 하부의 경우에는 거실의 용도가 아니므로 단열재 설치가 불필요한데도 단열재를 설치하는 것으로 설계에 반영(1,450m²)되어 있으며, 방습거울이 건축공사(20m²) 및 기계설비공사 내역서(105개)에 중복되어 계상되어 있고,

파일공사 실시 후 실제시공 물량에 대한 미정산(52m) 및 품질 시험비 중에서 현장에서 실시하는 자체시험의 경우에는 시험비용이 불필요한데도 레미콘의 슬럼프, 염화물, 공기함유량 시험을 위한 시험비용을 설계에 반영하는 등 23,356천원 상단에 대하여 감사일 현재까지 감액 설계변경(실정보고 승인) 등 행정조치를 취하지 않은 사실이 있습니다.

[처 분 요 구]

1. 각 공사별로 과다계상·중복계상 및 공사시행 후 미정산 된 67,219천원 상단에 대하여는 설계변경 감액 조치하여 주시기 바라며,
2. 지하층 벽체 결로현상 및 천정스라브 균열발생 등은 원인규명을 정확하게 하여 보수공사를 철저히 시행하여 주시고, 천정텍스 시공 불량은 재시공 조치 및 낙하물방지망 등은 관계규정에 적합하게 설치하여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그리고 앞으로는 이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각 공사현장별로 공사감독업무수행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 23]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부서기관명] 종합건설본부 건축부

[행정상 조치] 주의

[재정상 조치]

[신분상 조치]

[제 목] 직장보육시설 증축공사 공정관리 소홀

○ 공사개요

- 가. 공 사 명 : 직장보육시설(두루미 어린이집) 증축공사
- 나. 도 급 자 : ○○○합건설주식회사 대표 ○○○
- 다. 계약금액 : 833백만원
- 라. 계약일자 : 2007. 11. 13
- 마. 준공기한 : 2008. 05. 27(준공계 접수 : 2008.07.01 - 35일 지연)

[위법부당내용]

- 『건설기술관리법』 제35조 및 『인천광역시 건설공사감독자의 업무처리 규정』 제3조의 규정에 의거 공사감독자는 공사계획을 검토하고, 공사 시공상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소속기관의 장에게 보고하고 그 대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매월 공사진행 사항을 소속기관의 장에게 보고하도록 되어 있으며,

같은 규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시공자로부터 세부공정계획, 현장 기술자 확보사항, 기타 공사계획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한 시공계획서를 제출받아 검토하고 공사 진행상 문제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소속기관의 장에게 서면보고하여 그 대책을 강구하여야 하고, 제4항의 규정에 의거 공정계획에 따라 공사를 추진하도록 감독하고, 예정공정과 실시공정을 비교하여 부진한 경우 시공자로 하여금 부진

사유, 만회공정이 포함된 만회대책을 수립토록 지시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본 공사의 감리용역 과업지시서(4-사-공정관리)에 의하면 공사감리자는 계약된 공기내에 건설공사가 완료될 수 있도록 검토하여야 하며 공사진행에 관하여 세부공정계획, 공사시공자의 현장 기술자 및 장비 확보사항, 기타 공사계획에 관한 사항 등을 사전에 점검하여 공사진행상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발주청에 의견을 제시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종합건설본부에서 시행한 “직장보육시설 증축공사”의 경우 2007.11.19. 공사를 착공하였으나 2007.12.20부터 공사가 지연(계획공정 13%, 실시공정 8%)되기 시작하여 준공기한인 2008.05.27.에도 80%공정밖에 공사를 완료하지 않았는데도 공사감독자 및 공사감리자가 시공자로 하여금 구두상으로는 수차례에 걸쳐 공정만회에 대해 지시한 사실이 인정되나 부진사유, 부진공정 만회대책 수립지시 등 부진공정 만회를 위한 필요한 조치를 공사기간내에 서면상으로는 한번도 지시하지 않는 등 공정관리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습니다.

[처 분 요 구]

1. 공사감리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않은 감리자에 대하여는 엄중 경고조치 하시기 바라며, 앞으로는 이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공사감리자 지도·감독 및 공사감독 업무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 24]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부서기관명] 종합건설본부 건축부

[행정상 조치] 주의

[재정상 조치]

[신분상 조치]

[제 목] 건설재해예방 기술지도 미실시

○ 공사개요

가. 공 사 명 : 시립수봉양공장 건립공사

나. 도 급 자 : 주식회사 ○○○○○ 대표 ○○○

다. 계약금액 : 449백만원

라. 계약일자 : 2006. 11. 03

마. 준공기한 : 2007. 05. 07

[위법부당내용]

○ 『산업안전보건법』 제30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건설업자는 도급계약을 체결하거나 자체사업계획을 수립할 경우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도급금액 또는 사업비에 계상하도록 되어 있으며,

같은 법 제30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2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공사금액 3억원 이상 120억원 미만인 공사를 행하는 자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그 사용방법·재해예방조치 등에 관하여 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전문기관(이하 "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이라 한다)의 지도를 받도록 되어 있고,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기술지도는 공사기간 중 월 1회 실시하도록 되어 있고, 건설재해예방 기술지도비가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상된 안전관리비총액의 20%를 초과할 때에는 그 이내에서 기술지도 횟수를 조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법 제30조제4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처하게 되어 있습니다.

종합건설본부 건축부에서 시행한 “시립수봉양공장 건립공사”의 경우 재해예방전문기관에 건설재해예방 기술지도를 받지 않고 사업을 시행하였는데도 이에 대한 아무런 조치 없이 준공처리 하는 등 공사감독 업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습니다.

[처 분 요 구]

1. 산업안전보건법령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지방노동관서에 통보하여 행정조치 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라며, 앞으로는 이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공사감독 업무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 25]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부서기관명] 종합건설본부 토목부

[행정상 조치] 시정

[재정상 조치]

[신분상 조치]

[제 목] 학익하수종말처리장 건설공사 환경관리비 정산 부적정

[위법부당내용]

○ 건설공사에 있어 환경관리비란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28조의2(환경관리비의 산출등) 및 별표 15에 따라 환경보전비와 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비로 구성되며 환경보전비는 건설공사 현장에 설치하는 환경 오염방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으로써 발주자는 환경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공사금액에 계상하여야 하고, 계약자는 계상된 비용의 사용계획을 발주자에게 제출하며, 세륜시설, 방음벽 등 별표 15에서 정한 항목 내에서 건설현장에 설치하는 환경오염 방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에 한하여 발주자 또는 감리원이 확인한 비용의 사용실적에 따라 정산 하여야 합니다.

또한, 『국가를당사자로서의계약에관한법률』 제79조(정의) 규정에 의거 정부가 제시하는 공사일괄입찰기본계획 및 지침에 따라 입찰시에 그 공사의 설계서 기타 시공에 필요한 도면 및 서류(이하 "도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입찰서와 함께 제출하는 설계·시공일괄입찰에 대하여는 공사계약일반조건 (회계예규 2200.04-104-12, 2005.04.06) 제21조(대형공사의 설계변경)에 따라 “설계변경으로 계약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정부에 책임 있는 사유 또는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종합건설본부 토목부 에서는 “학익하수종말처리장 건설공사”를 시행하면서 세륜시설 철거 등에 따라 발생하는 폐기물에 대하여는 실시설계시 충분히 예측이 가능한 것으로 본 공사의 『공사 계약 일반조건』 제21조(대형 공사의 설계 변경등)의 “발주청의 책임 있는 사유 또는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한 경우를 제외 하고는 그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 없다.”라는 규정과 『일괄공사 계약 특수 조건』 제30조(공사 폐기물의 처리) 규정에 따라 계약금액의 조정 없이 계약자가 스스로 부담 처리함이 마땅함에도 이의 처리비 54,218천원 상당을 부당하게 환경보전비로 정산 기성 지급한 사실이 있습니다.

[처 분 요 구]

1. 폐기물 처리비로 부당하게 정산한 54,218천원에 대하여는 『건설기술 관리법』 시행규칙 제28조의2(환경관리비의 산출등) 및 별표 15 규정에 따라 재 정산하시기 바라며,
2. 관계 공무원에 대하여는 위와 같은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업무 연찬과 함께 엄정히 주의 촉구하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 26]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부서기관명] 종합건설본부 토목부

[행정상 조치] 주의·시정

[재정상 조치]

[신분상 조치]

[제 목] 건설기술자 배치·관리 소홀

[위법부당내용]

○ 건설업자는 건설공사의 시공관리 기타 기술상의 관리를 하게 하기 위하여 『건설산업기본법』 제40조(건설기술자의 배치) 규정에 따라 건설공사의 현장에 당해 공사의 공종에 상응하는 건설기술자 1인 이상을 건설공사의 착수와 동시에 배치하여야 하며, 배치된 건설기술자는 발주자의 승낙을 얻지 아니하고는 정당한 사유 없이 그 건설공사의 현장을 이탈하여서는 아니 되고, 공사계약일반조건(회계예규 2200.04-104-13, 2205.09.08) 및 지방자치단체공사계약일반조건(행정자치부예규 제195호, 2005.12.30)제14조 규정에 따라 계약상대자는 계약된 공사에 적합한 공사현장대리인(국가기술자격취득자 또는 건설기술관리법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기술자로 인정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을 지명하여 계약담당자에게 통지하고, 공사 현장 대리인은 공사현장에 상주하여 계약문서와 공사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공사현장의 단속 및 공사에 관한 모든 사항을 처리하여야 합니다.

또한 건설공사의 품질확보를 위하여 『같은 법』 제24조(건설공사의 품질관리)와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품질관리계획등 수립대상공사의 범위등)규정에 따라 총 공사비가 5억원 이상인 토목공사이거나 총 공사비가 2억원 이상인 전문공사에 대하여는 공사 규모에 적합한

품질관리 자를 배치하여야 하고, 건설현장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공사금액이 120억원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1의 토목공사에 속하는 공사는 150억원) 이상의 사업장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안전관리자등)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안전관리자의 선임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안전에 대한 기술적인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 또는 관리책임자를 보좌하고 관리 감독자에 대하여 이에 관한 지도·조언 직무만을 전담하는 안전관리 자를 두어야 합니다.

그리고 건설기술자는 건설기술관리법 제6조의3(건설기술자의 명의대여 금지등) 규정에 의거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다른 사람에게 건설공사 또는 건설기술 용역업무를 수행하게 하거나 건설기술 경력증을 대여하면 아니 되고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성명을 사용하여 건설공사 또는 건설기술용역 업무를 수행하거나 다른 사람의 건설기술 경력증을 대여 받아서는 아니 되고 『같은 법』 제6조의4(건설시공자의 업무정지등) 국토해양부장관은 (위임 받은 시장, 구청장) 건설기술자가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다른 사람에게 건설공사 또는 건설기술용역 업무를 수행하게 하거나 건설기술경력 증을 대여한 때에는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건설공사 또는 건설기술용역업무의 수행을 정지시킬 수 있으며, 『같은 법』 제42조의2(벌칙)은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건설공사 또는 건설기술용역업무를 수행하게 하거나 건설기술경력 증을 대여한 자 또는 다른 사람의 성명을 사용하여 건설공사 또는 건설기술 용역업무를 수행하거나 건설기술 경력 증을 대여 받은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기술 용역 및 건설공사 감독은 건설현장 또는 기술용역의 참여 기술자가 시공 또는 용역의 수행 관리상 적당하지 아니 하거나 『건설기술관리법』 등의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교체를 요구 등의 행정 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종합건설본부 토목부에서는 시행하는 “마전지구~월당지구간

도로개설공사” [도급자 : ○○○○(주)]에 2007. 10. 22부터 현재까지 배치된 품질관리자 ○○○의 경우 2008. 02. 22일부터 현재 까지 김포시에서 시행하는 “나진포천개수공사”현장 대리인으로 중복 배치되어 있고,

전담안전관리자를 배치하여야할 건설공사인 “당하지구~346지방도간 도로 개설공사”[도급자 : ○○○설(주)]의 안전관리자 ○○○의 경우 2007. 02. 09일부터 동 공사 현장에 전담에 배치되었으나, 2008. 01. 31부터 2008. 04. 14까지 “○○○○○○(주) 2공장건립공사 (발주 : ○○○○○○○(주)) 현장대리인으로 중복 배치되었던 사실이 있었으며,

하도급의 현장대리인 배치의 경우에는 “송도해안도로확장공사” 하도급사인 ○○○○○○○(주) (도급액 : 3,867백만원)에서 2007. 01. 23부터 현재까지 현장대리인으로 배치된 ○○○는 2007. 07. 25까지는 본 회사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주)유익건설에 근무하다 2007. 07. 26부터 ○○○○○○○(주)에 입사하여 실제로는 2007. 07. 26부터 본 현장에 배치된 사실이 있는 등 별첨 현황과 같이 건설공사의 기술자 배치·관리에 소홀한 사실이 있습니다.

[처 분 요 구]

1. 건설산업기본법, 건설기술관리법, 산업안전보건법 규정에 의한 건설 기술자의 현장배치기준, 품질관리자의 배치기준, 안전관리자의 배치 기준에 적합토록 배치하시고, 특히 하도급 업체에 대하여도 기술자의 배치 준수 여부를 철저히 관리 감독하시며,
2. 관계 공무원에 대하여는 위와 같은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업무 연찬과 함께 엄정히 주의 촉구하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 27]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부서기관명] 종합건설본부 토목부

[행정상 조치] 주의

[재정상 조치]

[신분상 조치] 훈계(1명)

[제 목] 굴포천 자연형하천 조성사업 준설토 처리 감독 소홀

○ 공사개요

- 사 업 명 : 굴포천 자연형하천 조성사업
- 도 급 액 : 14,619백만원
- 사업기간 : 2006.11.3 ~ 2008.10.23
- 시 공 사 : ○○○○○○○(주), (주)○○○종합건설
- 감 리 사 : ○○○○○○○공사, (주)○○○○○
- 폐기물처리 : ○○○○(주), (주)○○○○
- 준설토 선별·분리

구 분	설치기간	운영기간 (철거일)	준설토 선별	설치·운영비	비고
플랜트설치 운영	'07.3.2~3.30	'07.4.30~6.7 ('07.6.30)	5,145㎥	80,870천원	

[위법부당내용]

○ 건설기술관리법 제35조 규정에 의거 발주청이 발주하는 건설공사의 공사감독자는 그 감독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15제1항 규정에 의거 발주청 및 책임감리원은 시공자가 당해 건설공사의 공정·비용·품질·안전 및 하도급 관리 등에 관한 계획과 시공에 따른 교통소통 및 환경오염방지에 관한 대책을 적절히 이행하는지의 여부를 감리·감독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에 부평구 일대의 중심가를 관통하고 있는 굴포천 및 청천천의 치수 및 이수기능을 만족하면서 오염된 하천의 수질을 개선하여 친자연형 하천으로 정비하고자 2005.11.1. 굴포천 자연형 하천 조성사업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 하였으며, 용역 내용중 하천 준설시 발생하는 준설토에 대하여는 분리·선별하여 오니는 폐기물처리 하고 골재는 하천 내 유용토록 하는 것으로 하였으며,

그 기준으로는 굴포천 퇴적오니(준설토) 입도분석결과(6개 지점) 평균적으로 자갈과 같은 험잡물이 6.6%정도, 모래류 성분이 48.5% 정도, 오니성분이 45.1% 포함된 것으로 분석(2005.2.7 ○○대학교신기술연구소 환경복원기술센터 시험성적서 활용)되었으며, 현장상황과 비교하여 어느 정도 오차를 포함하고 있으므로 시공시 참고자료로 활용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종합건설본부 토목부(하수팀)에서는 2006.11.3. 굴포천 자연형하천 조성사업(용역비 14,619백만원, 용역기간 2006.11.3 ~ 2008.10.23)을 착수하여 128,106㎥ 준설토(퇴적오니)를 처리하면서,

굴포천 자연형 하천 조성사업 실시설계 용역서에도 퇴적오니(준설토) 입도분석결과 값이 현장 상황과 비교하여 오차가 있으므로 참고자료로 활용하도록 하였으므로 준설토를 재활용하기 전에 입도 및 함수비 등 물리적 특성을 재확인 후 타당할 경우 선별플랜트(분리기, 탈수기 등)를 설치하여 운영하여야 할 것이나,

굴포천 퇴적오니(준설토)에 대한 물리적 특성 조사하지 않고 2007.3.2 ~ 3.30사이에 선별플랜트를 설치하여 약 2개월(2007.4.30 ~ 6.7) 동안 준설토 5,145㎥을 선별한 결과, 모래류(왕사,세사)가 48.5%정도로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였으나 5%(257㎥)정도 밖에 발생 되지 않았으며,

또한 준설토의 함수비가 30~150%정도의 점토 덩어리 형태로 되어 있어 오히려 오니토의 량은 더 증가되는 결과를 초래하였습니다.

따라서 하천 준설시 발생하는 준설토를 재활용하기 위하여 선별 플랜트를 설치한지 3개월만에 해체(2007.6.30)하여 설치·철거비 및 운영비 등 약 80,870천원의 예산을 낭비 하였습니다.

[처 분 요 구]

1. 앞으로 준설토 재활용시 충분한 기초 조사를 바탕으로 재활용 가능 여부를 판단하여 시행하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 28]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부서기관명] 종합건설본부 토목부

[행정상 조치] 주의

[재정상 조치]

[신분상 조치]

[제 목] 준설토 처리용역 관리 소홀

○ 공사개요

- 사업명 : 승기천 하도정비 및 오염하천 정화공사 준설토 처리용역
- 도 급 액 : 2,072,271천원
- 사업기간 : 2007.5.18 ~ 2009.5.7
- 폐기물처리 : ○○○○(주)
- 1차분 폐기물(준설토)처리 현황

구 분	처리기간	처리량	타 업체 운반		비고
			업체명	량(톤)	
준설토	'07.11.10~12.20	15,805.56톤	○○○○(주)	1,814.42	

[위법부당내용]

- 용역업무 담당공무원은 과업지시서 및 관계법규 등을 충분히 검토하고 계약서의 적정 여부를 확인하여 용역수행 하여야 하며, 용역 수행시 위법사항이 발견될 시는 이를 즉시 시정조치 하여야 합니다.

이에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8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2조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업자의 준수사항(별표8) 제2호나목에 의하면 위탁 받은 폐기물의 운반을 재위탁하거나 재위탁을 받아서는 아니 되며, 동 사항을 위반시는 같은 법 제68조제1항제3호 규정에 의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종합건설본부 토목부(하수팀)에서는 2007.5.17 승기천 하도정비 및 오염하천 정화공사 폐기물 처리용역에 대하여 계약된 운반업체인 ○○○○(주)에서 2007.11.10 ~ 2007.12.20까지(1차분) 15,805.56톤의 준설토를 처리하면서,

대부분의 물량은 ○○○○(주)의 등록된 차량으로 운반하였으나, 일부 1,814.42톤의 잔여 물량에 대하여는 감리업체 등 인정하에 타 처리업체<○○○○(주)> 차량으로 운반 되었음에도 이에 대한 관리를 소홀히 하였습니다.

[처 분 요 구]

1. 수집·운반자가 위탁받은 폐기물을 다른 처리업자에게 운반을 위탁할 경우 사전에 배출자가 다른 처리업체로 하여금 수집·운반토록 승인 (계약 등) 절차를 거친 후 처리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라며,
2. 앞으로 배출자 승인절차 없이 폐기물의 운반을 재위탁 하거나 재위탁을 받을 경우 처리업 허가기관에 적법 조치토록 통보하시고, 금회에 한하여 엄중 주의를 촉구하오니 동일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 29]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부서기관명] 종합건설본부 건축부

[행정상 조치] 시정

[재정상 조치]

[신분상 조치]

[제 목] 인천종합비즈니스센터 건립공사 실시설계(기계분야) 부적정

[위법부당내용]

-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1조에 의하면 건축설비의 설치에 관한 기술적 기준과 건축물의 열손실방지 및 에너지의 합리적인 이용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이를 활용할 수 있게 시방서에 합리적으로 명시 또는 도면 등에 표기되어야하나,

인천광역시 종합건설본부에서 발주한 인천종합비즈니스센터건립공사 기본 및 실시설계 도면 중 위생배관 계통도를 살펴보면 시수는 지하 저수조로 유입되고 급수펌프를 통해 각 층으로 급수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시수가 저수조 유입전 인입배관에서 분기한 관을 급수펌프 토출관에 연결할 경우 급수펌프를 통하지 않고 지상5층까지 시수 공급이 가능하므로(인천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문의 결과 시수압은 약4.73kg/cm²이며 향후 감압변 설치로 3 및kg /cm²로 공급으로 지상 5층까지 직수 공급 가능) 급수펌프 가동 횟수의 현저한 감소로 인한 에너지 절약과 아울러 급수펌프 수리, 저수조청소 등 운영비를 절감할 수 있음에도 기본 및 실시설계시 이를 적용하지 않은 사실이 있습니다.

[처 분 요 구]

1.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 관련 규정을 면밀히 검토하여 사용자의 편리성, 에너지 절약, 운영비의 절감 등 합리적인 면을 공사 발주전 설계서에 적용하시기 바라며,
2. 아울러 동일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설계내역, 도면 등을 철저히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 30]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부서기관명] 종합건설본부 건축부

[행정상 조치] 시정

[재정상 조치]

[신분상 조치]

[제 목] 길정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전기공사 감리투입시기 부적정

[위법부당내용]

○ 전력기술관리법 제12조의 2(감리원의 배치) 에 의하면 전력기술관리법 규정에 따라 감리원이 선임되는 공사에 대하여는 산업자원부장관이 고시하는 감리원 배치기준에 따라 소속감리원을 공사 착공전에 배치하여 설계도서 및 제반공사와 관련된 일체의 설계도서를 공사 착수전 면밀히 검토 분석하여 적정 조치를 취하여 공사 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길정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전기공사 감리용역에 있어 전기공사 착공일인 2008.02.01일 보다 늦은 2008.02.12일에 감리원을 투입하여 공사 착공보다 감리용역이 11일 늦게 착수한 사실이 있습니다.

[처 분 요 구]

1. 전력기술관리법의 관련 규정을 면밀히 검토하여 공사 착공전 감리원을 투입하여 설계도서의 사전검토 등으로 양질의 공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감리배치기준을 준용하시기 바라며,
2. 아울러 동일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전력기술관리법 등을 철저히 검토 적용하시기 바랍니다.